



김해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 446호 2019. 10. 04(금)

선 람	기 관 의 장

조 례

제 1433호	김해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4427
제 1434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4428
제 1435호	김해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4429
제 1436호	김해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4430
제 1437호	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24431
제 1438호	김해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24434
제 1439호	김해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24436
제 1440호	김해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4437
제 1441호	김해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24438
제 1442호	김해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24439
제 1443호	김해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4440
제 1444호	김해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	24441
제 1445호	김해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24442
제 1446호	김해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4444
제 1447호	김해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24445
제 1448호	김해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24447
제 1449호	김해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24449
제 1450호	김해슬로시티문화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24451
제 1451호	김해시 전직대통령 노무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24452
제 1452호	김해시 교복지원 조례	24453
제 1453호	김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4454

규 칙

제 660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김해시에산성과금운영등에관한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24457
제 661호	김해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24459
제 662호	김해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4477
제 663호	김해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	24478
제 664호	김해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24484

회 람										
--------	--	--	--	--	--	--	--	--	--	--

발행 : 김해시 편집 : 공보관 (330-3011, 행정 3011)

고 시

제2019-245호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1-1, 소로3-70호선)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24486
제2019-246호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 공공공지, 소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24491
제2019-250호	김해도시관리계획(시설: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4492
제2019-252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김해도시관리계획(감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정정고시	24493
제2019-254호	진영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승인 고시.....	24498
제2019-255호	김해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공원, 공공공지) 결정(변경) ·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4500
제2019-256호	김해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분산성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24503

제22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김해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김해시장 허성곤

2019년 10월 4일

김해시 조례 제1433호

김해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김해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예산서 등의 제출)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제출받은 출자·출연기관의 결산서를 시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 김해시 출자·출연 기관의 예산운영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출자·출연 기관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를 시의회에 제출 규정 신설(제15조제1항)
- 출자·출연 기관의 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 규정 신설(제15조제2항)

제22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김해시장 허성곤

2019년 10월 4일

김해시 조례 제1434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려운 한자어 변경, 상위법령의 제명·인용 조항 변경 및 조례명 띄어쓰기 등을 일괄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계리”를 “회계처리”로 한다.

제3조(「김해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김해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전염성”을 “감염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정신이상자 또는 술취한 사람”을 “술 취한 사람”으로 한다.

제4조(「김해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의 개정) 김해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소년기본법 제22조”를 “「청소년 기본법」 제27조”로 하고,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를 “청소년지도위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지도위원”을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로, “청소년 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을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제5조(「김해시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조례」의 개정) 김해시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김해시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조례”를 “김해시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조례”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 [별지 제1호서식] ”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호적담당자”를 “가족관계등록 담당자”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 「모·부자복지법」 ”을 “ 「한부모가족지원법」 ”으로 한다.

제6조(「김해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의 개정) 김해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김해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를 “김해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계리”를 “회계처리”로 한다.

제18조 제목 중 “계리”를 “회계처리”로,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계리”를 “회계처리”로 한다.

제7조(「김해시수도사업설치조례」의 개정) 김해시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김해시수도사업설치조례”를 “김해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계리”를 “회계처리”로 한다.

제19조 제목 중 “계리”를 “회계처리”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계리상환”을 “회계처리상환”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 어려운 한자어 변경, 상위법령의 제명·인용 조항 변경 및 조례명 띄어쓰기 등 정비대상 조례를 일괄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어려운 한자어 변경(제2조, 제6조, 제7조)
- 상위법령 제명·인용 조항 변경(제4조, 제5조)
- 조례명 띄어쓰기 정비(제5조, 제6조, 제7조)

제22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김해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김해시장 허성곤

2019년 10월 4일

김해시 조례 제1435호

김해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김해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제25조로 하고,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사기진작) 시장은 주민자치위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위원 표창 및 국내외 연수·체육대회·수련대회 등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 지방분권 및 주민자치 시대를 맞아 지역공동체 형성에 앞장서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표창, 연수, 체육대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주민자치위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위원 표창 및 국내외 연수·체육대회·수련대회 등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규정 신설(제24조)

제22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김해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김해시장 허성곤

2019년 10월 4일

김해시 조례 제1436호

김해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김해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특화거리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제2항 중 “다만, 이 경우”를 “이 경우”로 하고, “50%이상”을 “20% 이상”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문·심의하기”를 “심의·의결하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 특화거리의 사업비 중 상인조직의 자부담 비율을 감소시켜 이를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특화거리의 사업비 중 상인조직의 자부담 비율을 20% 이상으로 함(제9조)

제22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김해시장 허성곤

2019년 10월 4일

김해시 조례 제1437호

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기업”이란 관내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 또는 폐건물을 투자 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 시설물을 설치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사업장”이란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제조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3. “수소산업”이란 수소의 제조·포집·정제·저장·운반·충전·연료전지발전 및 이와 관련된 제품이나 장비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나노융합산업”이란 나노기술을 기존 기술에 접목하여 기존 제품을 개선·혁신하거나 나노기능에 의존하는 새로운 제품을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5. “항공부품산업”이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관련부속기 기류 및 관련소재류를 제조·가공·조립·재생·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6. “드론산업”이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5호가목 무인동력비행장치를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
7.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중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골프장은 제외한다),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을 말한다.
8. “지식서비스산업”이란 지식의 생산, 가공, 활용 및 유통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업종에 의한 연구개발업 및 병원을 말한다.
9.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다.
10.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다.
11.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8항에 따른다.
12.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13. “전략산업”이란 「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다.
14. “사업개시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 가. 제조업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일
 - 나. 제조업 외의 경우 투자기업이 해당 사업장을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날

제2장 기업투자에 대한 지원

제3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등)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외 소재 사업장의 관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김해시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② 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설비보조금, 이전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과 지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업투자촉진지구의 분양이 완료된 경우 또는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지정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수도권기업의 이전 등에 대한 지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및 제19조에 따라 수도권기업의 관내 이전기업, 관내 신·증설투자기업, 관내로의 국내복귀기업 등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관외기업의 관내이전 지원) ① 시장은 관외에 소재하는 기업의 본점,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10억원까지 보조금 또는 최대 50억원까지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과 지원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대·중·소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중·소규모 투자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10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과 지원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신·증설기업 지원) ① 시장은 관내 기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이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5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과 지원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국내복귀기업 지원) 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선정된 국내복귀기업이 관내에 투자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2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과 지원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의생명기업 등 지원) ① 의생명기업 사업자가 관내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신·증설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6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미래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수소·나노융합·항공부품·드론산업, 식료품 제조업, 관광사업 및 지식서비스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관내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신·증설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2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과 지원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투자촉진기반시설 지원) 시장은 민간투자촉진을 위하여 관내 투자기업(국내외 기업 모두를 포함한다)을 위한 도로, 용수, 전기 등 기반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임대용지 공급) 시장은 전략산업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기업유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산업용 부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제12조(우선 지원에 대한 특례)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융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전략산업 업종 및 연구소
2. 그 밖에 시장이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기업

제3장 외국인투자의 지원

제13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에서 정한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②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1항의 외국인투자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③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외국인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의 요건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지방세 감면)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제15조(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내기업과 같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지원제한) 법 제14조의2에 따라 외국인투자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17조(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과 지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국내기업 지원기준 준용) 외국인투자기업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본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내기업 지원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규정과 국내기업 지원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제19조(사업타당성 분석 용역)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투자자가 신규투자를 하거나 새로운 사업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실현 가능성 및 기대효과 등 타당성 분석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20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등과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게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대부로 감면율은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1조(민원처리 특례)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보다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4장 투자유치 지원체제

제22조(투자유치진흥기금) ① 시장은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가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도지사과 시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시장은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각종 보조금의 지급
2. 임대산업단지 용지매입
3. 사업장 부지매입비 융자지원
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2항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 세부적인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투자유치위원회) ①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김해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투자유치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시의원 및 관계 공무원, 투자유치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경제계·법조계·학계·금융계 등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투자유치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2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의 유치·지원에 관한 사항
2.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5조(회의 소집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제척된다.

②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1.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심신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27조(위원의 수당과 여비 지급) 위촉위원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보조금의 지원 등

제28조(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보조금 지원 등) ① 시장은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7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도비 등의 자금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투자기업의 관내 유치를 위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시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가 분담하는 경비의 부담비율 및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와의 협의하여야 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분담경비의 규모를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9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시장이 투자유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이 투자계획을 이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등) ① 시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은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융자금은 조기상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사업개시일부터 규칙으로 정하는 사후관리기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할 경우
4. 부지매입 또는 임차 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사업장의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융자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의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5. 사업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6. 사업장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7.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정산 시의 상시고용인원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8.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사업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9. 그 밖에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환수 또는 조기상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31조(지원받은 기업의 의무) ①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초 계획된 부지에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매입비를 지원받은 기업이 착공 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계획된 부지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승인 절차를 거친 후 사업 부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②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 기간 이상 경영하고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2조(투자유치 기여자 포상) 시장은 국내외 투자 및 기업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단체(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에는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제33조(이중지원 금지) ① 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이 국가나 도 등으로부터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시장은 관내에 투자하는 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과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나 도가 지원하는 보조금이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행정지원) 시장은 국내기업 등이 공장이나 본사 또는 연구소를 관내로 이전하거나 신·증설하는 경우에는 전담 관리자 지정 등 행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5조(투자유치자문관) ① 시장은 국내외 투자유치전문가를 김해시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여비,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유치 지원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관외기업의 관내이전 지원(제5조)
- 대·중·소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조항 신설(제6조)
- 신·증설기업 지원에 대한 조항 신설(제7조)
- 국내복귀기업 지원에 대한 조항 신설(제8조)
- 의생명기업 등 지원 조항 신설(제9조)
- 임대용지 공급 조항 신설(제11조)
- 보조금 우선지원에 대한 특례 조항 신설(제12조)
- 보조금·융자금 취소·환수 사유 추가(제30조)
- 지원받은 기업의 의무 조항 신설(제31조)
- 행정지원 조항 신설(제34조)
- 김해시 투자유치자문관 위촉 조항 신설(제35조)

제22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김해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김해시장 허성곤

2019년 10월 4일

김해시 조례 제1438호

김해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김해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이하 “지역사회통합돌봄”이라 한다)이란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며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돌봄, 독립생활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을 발굴·추진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실행계획(이하 “지역사회통합돌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역사회통합돌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분야별 추진시책 및 추진방법
3.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관련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계획의 실시 등) ①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 시행 전에 지역사회통합돌봄 담당 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사업의 대상자와 관련 기관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실적의 평가) 시장은 필요한 경우 매년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다음 연도 지역사회통합돌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건강한 노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방문건강서비스 지원
 - 나. 만성질환 관리 지원
 - 다.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살던 곳에서 노년을 보내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요양·돌봄서비스 지원
 - 나. 영양관리를 위한 식사 및 식재료 지원
 - 다. 그 밖에 노인의 재가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고령 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주택개량 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
 - 나.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수단 지원
 - 다. 돌봄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스마트홈시스템 지원
 - 라.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 필요 사업
4.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지역케어회의 운영
 - 나. 지역사회통합돌봄 전담 창구 운영
 - 다.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 추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5. 그 밖에 노인의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7조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예산 지원) 시장은 제7조의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및 교육 등) ① 시장은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홍보 및 교육을 할 수 있다.

1. 주민 및 단체의 참여를 위한 홍보활동
2.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3. 포럼, 워크숍 및 주민참여 교육 등

② 시장은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자문단의 설치)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김해시 지역사회통합돌봄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1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 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 체계 구축 및 연계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13조(구성) ① 자문단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사회통합돌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1명
2.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 서비스 제공기관의 대표자
4. 그 밖에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에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종료될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된다.

제15조(회의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기간) 이 조례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기간 동안 운영한다.

◇ 제안이유

-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노인에 대한 통합돌봄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하여 노인이 지역공동체와 더불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년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제1조 ~ 제3조)
-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계획의 수립, 실시 및 추진실적의 평가(제4조 ~ 제6조)
-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제7조 ~ 제10조)
-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제11조 ~ 제16조)

제22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김해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김해시장 허성곤

2019년 10월 4일

김해시 조례 제1439호

김해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일독립운동과 그 유적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선열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김해시민의 역사관 재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일독립운동”이란 구한말 의병운동, 3·1운동과 같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맞서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일어난 자주독립운동을 말한다.
2. “항일독립운동유적”이란 시 관내에 소재한 항일독립운동과 관련된 장소 또는 건축물 등을 말한다.
3.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와 이념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념사업) 시장은 항일독립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항일독립운동유적의 발굴·보존 사업
2. 독립유공자 추모사업
3. 항일독립운동 기념일 관련 지역 내 기념행사
4. 민족·민주·평화의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5. 항일독립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 등 사료의 보관·관리 사업
6.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 김해시 관련 항일독립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역사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제1조,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제3조)
-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제4조)
- 사업의 위탁 및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제5조, 제6조)

제22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김해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김해시장 허성곤

2019년 10월 4일

김해시 조례 제1440호

김해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김해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김해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를 “김해시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보호에”를 “보호와 지원에”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미만의 자를”을 “미만인 사람을”로 한다.

제4조 중 “법률”을 “법원”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아동·여성인권김해시연대의 설치 및 운영”을 “김해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의 설치 및 운영”으로 한다.

제5조 중 “지역주민”을 “시민”으로 하고, “아동·여성인권김해시연대”를 “김해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구성) ① 연대는 공동대표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아동·여성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기관·시설 및 단체의 대표나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부시장과 아동·여성폭력 관련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1.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기관 또는 시설
3.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와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기관 또는 의료기관
4. 아동·가족지원시설
5. 청소년상담지원시설
6. 교육기관(초·중·고등학교, 교육지원청 등)
7. 형사사법기관(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8. 시민사회단체
9. 학계전문가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시설 및 단체

③ 연대는 제2항 각 호 중에서 5개 유형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공동대표는 당연직 위원인 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 호선된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7조제4호 중 “주민홍보”를 “시민홍보”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대표가 결정한다”를 “의결한다”로 한다.

제13조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주민”을 “시민”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을 “시민”으로 하고, “시홈페이지”를 “김해시 인터넷 홈페이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주민”을 “시민”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 아동·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김해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에 관련 기관·시설 및 단체의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내실 있는 지역연대를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아동·여성인권김해시연대”를 “김해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로 명칭 변경(제5조)
-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시설 등을 추가하여 협력 체계를 구축(제6조)
- 김해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회의 의결에서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되는 것으로 처리(제10조제2항)

제22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김해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김해시장 허성곤

2019년 10월 4일

김해시 조례 제1441호

김해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김해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김해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김해시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성별영향평가법」”으로 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분석평가하여”를 “평가하여”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를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을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같은 항 및 제4항 중 “분석평가”를 각각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제4항 중 “시민참여”를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시민참여”로, “민관협력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을 “민관협력체계를 구축”으로 한다.

제4조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분석평가결과의 반영)”을 “(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성별영향평가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분석평가”를 각각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분석평가책임관”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분석평가업무”를 “성별영향평가업무”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조의 제목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특정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특정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를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분석평가를”을 “성별영향평가를”로, “분석평가업무 담당국장을 분석평가책임관”을 “성별영향평가업무 담당국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석평가책임관”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분석평가의”를 “성별영향평가의”로, “분석평가서”를 “성별영향평가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분석평가결과”를 “성별영향평가결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분석평가”를 각각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분석평가의”를 “성별영향평가의”로, “분석평가담당관”을 “성별영향평가담당관”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분석평가 교육)”을 “(성별영향평가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분석평가”를 각각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분석평가 전문인력 양성 및 정보공개 등)”을 “(성별영향평가 전문인력 양성 및 정보공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분석평가”를 각각 “성별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분석평가·성인지”를 “성별영향평가·성인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김해시”를 “김해시 인터넷”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포상) 정책 등의 성별영향평가를 통하여 공적이 우수한 공무원, 시민 및 기관·단체에 대하여 「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 상위법명의 변경을 조례에 반영하고,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정책추진과 수요자의 성별 특성에 기반한 정책실행으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제3조)
- 분과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신설(제7조의2)
-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 신설(제16조의2)

제22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김해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김해시장 허성곤

2019년 10월 4일

김해시 조례 제1442호

김해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에 주소를 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원만히 정착하여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권익증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이하 “영주귀국주민”이라 한다)이란 러시아 사할린(이하 “사할린”이라 한다)에 강제 동원되었거나 그곳에서 출생 또는 거주한 한인 및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서 국가의 사할린한인 영주귀국 사업에 따라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영주귀국주민 지원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영주귀국주민 지원사업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영주귀국주민 지원에 관하여 정한 규정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주귀국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주귀국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영주귀국주민 집중거주 지역의 생활편의 등 환경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영주귀국주민 지원업무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방향
2. 지원사업의 세부 추진방안
3. 관련 단체·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의 효율적 수립·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관련 기관에 의뢰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대한민국의 국적 취득 전이라도 시에 거주를 둔 사람이어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 시장은 제7조의 지원대상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주귀국주민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인권보호 교육·홍보
2.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3. 시민과 영주귀국주민 상호간 이해와 소통을 위한 교육
4. 의료기관, 법원 방문 등 언어상 한계 극복에 필요한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
5. 건강생활에 필요한 응급구조 등 보건의료
6. 문화·체육활동 기회 제공
7. 영주귀국주민을 방문하는 후세대를 위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기회 제공
8. 국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 친척 등과 만남의 기회 제공
9. 사할린에 남아있는 친족 등과의 교류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영주귀국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사업비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기념행사 등 지원) 시장은 영주귀국주민을 포용하고 국가와 시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한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① 시장은 영주귀국주민 지원업무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 김해시에 주소를 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원만히 정착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제1조,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제4조)
-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제5조, 제6조)
-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제7조, 제8조)
- 단체 및 기념행사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제9조, 제10조)

제22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김해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김해시장 허성곤

2019년 10월 4일

김해시 조례 제1443호

김해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서로 신뢰·협력하는 풍토를 마련하고 김해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활동”이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민간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하고 자발적인 활동을 말한다. 다만, 영리나 친목 또는 자원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은 제외한다.
2. “공익활동단체”란 공익활동을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시 소재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사실상 특정 정당, 이념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설립·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제외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공익활동 참여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시민은 누구나 다양한 공익활동을 자발적으로 주도하거나 이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그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활동 내용을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공익활동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익활동단체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풀뿌리 주민운동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 지원 사업
2. 시민사회 역량 강화 사업
3.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연구, 조사 및 교육 사업
4.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회통합 사업
5.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 관련 국내외 교류 협력 사업

제7조(지원 대상 자격요건) 공익활동단체가 재정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갖추어야 한다.

1. 지원대상은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 법인 및 단체일 것
2.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3.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제8조(보조금의 지급 등) 제6조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센터의 설치·운영 등) 시장은 공익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김해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시장은 공익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큰 기여를 한 단체 또는 관련되는 사람에 대하여 「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 시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서로 신뢰·협력하는 풍토를 마련하고 김해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 주요내용

-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제1조, 제2조)
-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제3조, 제4조)
-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제6조)
- 지원대상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제7조)
-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제8조)
- 센터의 설치·운영 및 포상에 관한 사항(제9조, 제10조)

제22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김해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김해시장 허성곤

2019년 10월 4일

김해시 조례 제1444호

김해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

김해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및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명칭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변경)의 설치 및 운영은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규정함이 적법하므로 「김해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함과 동시에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김해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함

제22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김해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김해시장 허성곤

2019년 10월 4일

김해시 조례 제1445호

김해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이란 차량 등의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3. “고령운전자”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동차 운전면허(원동기, 2종 소형 제외)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4.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지역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경우에는 교통약자와 보행자 및 자전거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차량 운전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육상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김해시 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 방향
2.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
-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김해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한다.
-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김해시 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2.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3. 교통사고 현황 및 분석
가. 연간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상자 내역
나. 교통수단별·교통시설별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
다.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
라. 교통사고의 분석 및 대책
4. 법 제57조에 따른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노력
-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김해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사항
3. 위원장 및 위원이 제출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교통안전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
2. 시의회 의원
3. 김해중부경찰서, 김해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4.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교통안전정책 담당 과장
5. 김해동부소방서, 김해서부소방서 교통안전 관련업무 담당 과장
6. 교통관련 운수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7.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시 소속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 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장기불참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제 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8조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개최한다.

-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심의 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 14조(위원회 운영)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15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 16조(자료의 제출 등)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17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 18조(교통안전교육 등)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직접 또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
3. 시민의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통한 교통안전 실천 교육

제 1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20조(교통지도 등) 시장은 교통안전 봉사단체 등에 시가 주관하는 행사의 주변도로상의 주·정차 관리 및 차량소통 등 교통지도와 평소 교통안전 활동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 21조(보조금 지원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20조에 따른 교통지도 등에 협조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2.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조제1호에 따른 모범운전자로 구성되어 교통경찰 보조 업무 및 교통질서 홍보활동을 수행하는 교통질서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 ② 시장은 교통안전 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모범운전자회 및 교통안전 봉사단체나 그 회원에게 「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 및 사업비 정산·검사 등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2조(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교통비 지원 등)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때에는 교통비 지원 등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제 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 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김해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 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김해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 제안이유

-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교통안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 교통안전기본계획과 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하여 규정함(제6조, 제7조)
-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함(제8조)
-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에 대하여 규정함(제9조 ~ 제11조)
-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8조)
-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21조)
-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때에는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22조)

제22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김해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김해시장 허성곤

2019년 10월 4일

김해시 조례 제1446호

김해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김해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 란의 제4호가목의 과태료 “30만원”을 “25만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과태료 “50만원”을 “45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 상위법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부합되도록 과태료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위법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초과한 과태료 규정 개정(별표 6)
 -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 가. 1회 위반한 경우 : 30만원 → 25만원
 -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 50만원 → 45만원

제22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김해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김해시장 허성곤

2019년 10월 4일

김해시 조례 제1447호

김해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건강도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상호 협력하며,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4. “생활터”란 물리적, 사회적 생활의 장으로 교육기관, 사업장, 시장, 의료기관, 종교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지지적인 환경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도록 음식, 물, 주거, 환경, 안전 등과 관련한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상호 협력적이고 통합적인 지역사회를 형성하여 활기차고 다양한 도시 여건이 이루어지도록 건강도시 조성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이 자신들의 건강과 안녕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소들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모든 시민들이 건강과 관련된 자원, 경험, 보건서비스에 공평하게 접근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준 높은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건강도시 조성사업) 시장은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건강도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2. 시민 참여 건강증진 사업 강화
3. 올바른 건강지식 제공과 건강생활의 습관화
4. 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 연맹가입 및 국내외 정보교류 연결망 구축
5. 생활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운영
6.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4조에 따른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도시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5. 제6조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건강도시와 관련된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수행을 위한 지원 등) ①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과 관련한 참여자에게 시상금 및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에 공헌이 많은 시민,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③ 건강도시 사업의 지원 및 표창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효율적인 건강도시 사업추진을 위하여 김해시 건강도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김해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 확보 및 부문 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강도시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위원회는 건강도시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민참여) ① 모든 시민은 건강도시 사업추진 과정에 자발적인 참여 및 의견 제시를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시민의 역할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국가 및 단체 간의 협력)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추진을 위하여 국가 및 국제기구,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의 상호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해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김해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김해시 건강도시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 제안이유

- 김해시를 세계보건기구(WHO)가 지향하는 건강도시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 친화적 정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제1조, 제2조)
- 건강도시 조성사업 및 기본계획 수립(제4조, 제5조)
- 사업 수행을 위한 지원 등(제6조)
- 김해시 건강도시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7조)
- 주민참여(제9조)
- 국가 및 단체 간의 협력(제10조)

제22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김해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김해시장 허성곤

2019년 10월 4일

김해시 조례 제1448호

김해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김해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김해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시민의 삶이 곧 문화가 되는 문화예술 구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2. “문화권”이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말한다.
3.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장을 계획하고 집행함에 있어 문화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시의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문화도시 시행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시민의 문화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계층, 지역, 성별, 인종 등의 제한 없이 다양한 문화가 표현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을 보호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적·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도시 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제4항의 사항
 2.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견수렴) 시장은 시행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김해시 문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과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계획의 추진·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문화와 도시 분야(도시계획·도시재생·도시경관 등을 말한다) 간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
- ② 시장은 위원회 내 별도의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업무 담당 국·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역사·도시계획·법률 등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3.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그 밖에 시장이 문화도시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4. 제11조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연구·용역·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부서의 관계자를 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간사 등)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도시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문화도시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4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문화도시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문화도시센터를 둘 수 있다.

② 문화도시센터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세부 운영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 관련 전문법인, 지역 문화예술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 김해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김해시를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도시로 구현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제1조,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제4조)
- 문화도시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제5조)
-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제6조)
- 문화도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제7조)
- 문화도시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제8조)
- 문화도시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제15조)
-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제16조)

제22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김해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김해시장 허성곤

2019년 10월 4일

김해시 조례 제1449호

김해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해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다양성”과 “문화적 표현”이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다.
2. “문화적 관용”이란 개인이나 집단의 국적, 민족, 인종, 종교, 언어, 지역, 성별, 세대, 학력, 정신적·신체적 능력 등의 차이에 따른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를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않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다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조사·연구,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지역 간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문화적 관용으로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시민은 문화적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며, 다른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실행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실행계획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에 있어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김해시 문화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실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시행 평가
 2.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3. 제9조에 따른 지원
 4. 제10조에 따른 교육
 5. 제11조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6.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관계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및 위촉한다.

1. 김해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 문화예술·복지·여성가족정책 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 ⑧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문화다양성을 이루는 문화적 요소,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의식수준, 문화 향유·창조 활동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관한 사항
2. 문화 향유활동이나 창조활동에서의 다양성에 관한 사항
3.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관련 시설, 자원 및 인력에 관한 사항
4.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현황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문화다양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① 시장은 문화예술, 학술, 체육, 문화산업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나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위한 문화시설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조화를 위한 활동
2. 다양한 문화의 표현 및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활동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 관련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교육) 시장은 교사, 아동, 청소년, 그밖에 문화다양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문화다양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문화다양성 공감대 형성과 철학
2.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민속
3. 문화적 관용 및 문화다양성 가치 실천의 구체적 방법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관련 정보의 수집·조사
2.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재의 개발 지원
3. 그밖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지원

제12조(권고 등) 시장은 문화적 차별 행위에 대하여 공공기관, 단체, 개인 등에게 시정 혹은 개선을 요청하는 권고를 할 수 있으며 권고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지원 및 점검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지역사회 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제1조,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제3조)
- 시민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제4조)
- 실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제6조)
- 문화다양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제7조)
-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제8조)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제9조)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제10조, 제11조)
- 권고 등에 관한 사항(제12조)

제22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김해슬로시티문화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김해시장 허성곤

2019년 10월 4일

김해시 조례 제1450호

김해슬로시티문화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역문화예술 창달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김해슬로시티문화창작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김해슬로시티문화창작소(이하 “문화창작소”라 한다)는 김해시 생림면 안양로274번길 397에 둔다.

제3조(시설) 문화창작소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1. 창작공간
2. 체험공간
3. 다목적실
4. 그 밖의 편의시설(남녀 화장실 내 기저귀 교환대 등)

제4조(기능) 문화창작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2. 정신문화 함양 및 여가 활동 프로그램 운영
3. 시민의 공공집회 및 학술·예술을 위한 장소 제공
4. 그 밖에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이용) 문화창작소는 시민이 우선적으로 이용하며, 이용실적이 부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른 지역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다.

제6조(위탁 등) ① 시장은 문화창작소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창작소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7조(위탁계약 및 기간) ① 위탁에 관한 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수탁시설 운영·관리) ① 문화창작소의 운영·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수탁자가 문화창작소의 기본운영 취지에 맞게 수립하여 매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② 수탁자는 문화창작소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체험료, 재료비 등 운영에 따른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자의 행위제한)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수탁재산을 제4조의 기능 외로 사용하는 행위
2. 수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3. 수탁재산의 운영·관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
4.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② 수탁자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이 시설 운영·관리 현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원된 운영·관리비의 집행에 관한 장부 등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조사 또는 검사 결과 관계규정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위탁계약을 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현저히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4. 수탁자가 제10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② 수탁자는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연고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김해예술창작소스튜디오설치및운영조례」는 폐지한다.

◆ 제안이유

- 김해예술창작소스튜디오를 슬로시티 문화의 공간으로 만들어 지역 문화예술을 창달하고 시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위치·시설에 관한 사항(제1조 ~ 제3조)
- 기능에 관한 사항(제4조)
- 위탁 등에 관한 사항(제6조)
- 위탁계약 및 기간에 관한 사항(제7조)
- 수탁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제8조)
- 수탁자의 의무 및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제9조, 제10조)
- 위탁의 해지에 관한 사항(제12조)

제22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김해시 전직대통령 노무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김해시장 허성곤

2019년 10월 4일

김해시 조례 제1451호

김해시 전직대통령 노무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에서 출생한 노무현 전직대통령의 위업을 기리고 시민의 자긍심을 고양하는 기념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념사업의 지원)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무현 전직대통령(이하 “전직대통령”이라 한다)의 위업을 기리기 위한 소재의 발굴·육성 및 전승과 관련한 사업
2. 전직대통령에 대한 추모 행사와 관련한 사업
3. 전직대통령 관련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기념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위탁) 시장은 제2조 각 호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금 등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금 등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김해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 김해시에서 출생한 노무현 전직대통령의 위업을 기리고 시민의 자긍심을 고양하는 기념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을 위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제2조)
- 기념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제3조)

제22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김해시 교복지원 조례 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김해시장 허성곤

2019년 10월 4일

김해시 조례 제1452호

김해시 교복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교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각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은 김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김해시 소재의 학교를 다니는 중·고등학교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2.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복을 입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3. 경상남도 내 또는 다른 시·도에서 전입하는 학생

제5조(지원 금액 및 절차 등) ①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

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6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교복구입비 지원은 2020년 중학교 입학생·전입생과 2021년 고등학교 입학생·전입생부터 적용한다.

◇ 제안이유

- 김해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학생들의 교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제1조, 제2조)
- 교복구입비의 지원(제3조)
-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제4조)
-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 및 절차 등(제5조)
- 교복구입비 환수(제6조)

제22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김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김해시장 허성곤

2019년 10월 4일

김해시 조례 제1453호

김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김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의원”으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출연한 기관·단체

나. 시가 사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다. 시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2. “관리인”이란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의 위원 등 공공단체의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지는 임·직원을 말한다.

제2조 중 “의원”을 “김해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별표”를 “별표 1”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 중 “김해시”를 각각 “시”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의2에 따라 시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같은 서식으로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1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검직사실이 없는 의원은 별지 제3호서식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징계 등) ① 의원이 이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1. 검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거짓을 발견한 경우

2. 검직을 하는 것이 법 제36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 권고를 거부한 경우

3. 수의계약 체결제한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거짓을 발견한 경우

4. 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의 거래를 한 경우

5. 시와 계약체결을 한 경우

6. 관리인 등 검직 금지와 관련한 사임 권고를 거부한 경우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2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징계기준(제9조의2 관련)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1. 겸직신고 위반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경고
	○ 겸직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법 제36조제2항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 체결제한 위반)	○ 영리거래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경고
	○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수의계약 체결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별지 제1호서식]

김해시의회 의원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변경) 신고서									
성 명		(남/여)			생년월일				
수의계약 체결제한 관련자		총 명(남: 명/여:)							
		본인 관련자 명(남: 명/여:)			본인, 직계존·비속 명				
		배우자 관련자 명 (남: 명/여:)		유 무		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			
연 번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명 (상호,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지분율	기타
		(남/여)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 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김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김해시의회 의원					(인)				
김해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연번	검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					
김해시의회 의원 검직(변경) 신고서						
성명	소속정당	선거구	지역구	비례대표		
	한 글	(남/여)	구분	비례대표		
	한 자		생년월일			
검직내용	기관·단체명					
	직 위	기간	~			
	수행업무내역					
	분야		농수산 <input type="checkbox"/> , 상공업 <input type="checkbox"/> , 건설업 <input type="checkbox"/> , 서비스업 <input type="checkbox"/> , 교육 <input type="checkbox"/> , 전문직 <input type="checkbox"/> , 기타 <input type="checkbox"/>			
	영리성 여부		영리 <input type="checkbox"/> , 비영리 <input type="checkbox"/>			
	보수수령 여부		보수수령 <input type="checkbox"/> , 보수 미수령 <input type="checkbox"/>			
	보수 수령액 (연간)		근로소득		원	
근로소득 이외 소득			원			
계			원			
주소			전화번호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김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검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김해시의회 의원 (인)

김해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검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성명	소속정당	선거구	지역구	비례대표	
	한 글	(남/여)	구분	비례대표	
	한 자		생년월일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김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검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김해시의회 의원 (인)

김해시의회의장 귀하

◇ 제안이유

- 2018년 12월 24일자로 공포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령(대통령령)과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정 사항 반영 요청에 대해 검직신고 규정을 구체화하고 신고내용 확인·검증 및 위반 시 제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실효성 확보 및 시의회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개정함

◇ 주요내용

- 정의 규정 신설(제1조의2)
- 수익계약 체결제한 사항 신고(제8조의2)
- 시의원의 검직 사임 권고 신설(제9조제7항)
- 검직 및 수익계약 체결제한 사항 등 부정신고에 대한 징계 등(제13조)

제530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김해시에산성과금운영등에관한규칙 등 일부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김해시장 허성곤

2019년 10월 4일

김해시 규칙 제660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김해시에산성과금운영등에관한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려운 한자어 변경, 상위법령의 제명·인용 조항 변경 및 규칙명 띄어쓰기 등을 일괄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김해시에산성과금운영등에관한규칙」의 개정) 김해시에산성과금운영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김해시에산성과금운영등에관한규칙”을 “김해시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조 중 “행정안전부령 제1호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으로 하고, “[별표]”를 “별표”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2제1항”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 중 “영 제3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54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영 제33조의4제1항에 의한”을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자”의 범위는 규칙 제12조제2항을 따른다.

제15조제1항 중 “영 제33조의4제2항”을 “영 제51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김해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김해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

제5조(「김해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김해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김해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전염성”을 “감염성”으로 한다.

제6조(「김해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김해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제4호”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제7호”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4조제1항”을 “제4조제1호”로 한다.

제7조(「김해시사무인계인수규칙」의 개정) 김해시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김해시사무인계인수규칙”을 “김해시 사무인계인수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동법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김해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의 개정) 김해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2제1호”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로 한다.

제9조(「김해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의 개정) 김해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나목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제10조(「김해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의 개정) 김해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로 한다.

제11조(「김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김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김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김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제10조 중 “조례”를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기부채납”을 “기부채납”으로 한다.

제35조 중 “준용할 수 있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2조(「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25조제3항”을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3항”으로 한다.

제13조(「김해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김해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김해시 오토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김해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4조(「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가목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15조(「김해시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 김해시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16조(「김해시상수도사업비지방채조례시행규칙」의 개정) 김해시상수도사업비지방채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계리”를 “회계처리”로 한다.

제17조 중 “계리”를 “회계처리”로 한다.

제24조 제목 중 “기장”을 “기록”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기장”을 “기록”으로 한다.

제27조 중 “주서”를 “붉은 글씨로 기재”로 한다.

제17조(「김해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김해시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규정을 준용한다”를 “「지방세기본법」 제90조를 따른다”로 한다.

제18조(「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 어려운 한자어 변경, 상위법령의 제명·인용 조항 변경 및 규칙명 띄어쓰기 등 정비대상 규칙을 일괄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어려운 한자어 변경(제16조)
- 상위법령 제명·인용 조항 변경(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제17조)
- 규칙명 띄어쓰기 정비(제7조, 제11조, 제14조)
- 용어 정비(제5조, 제11조, 제15조)

제530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김해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김해시장 허성곤

2019년 10월 4일

김해시 규칙 제661호

김해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김해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금액”이란 부지매입비, 임대료, 설비투자금액을 말한다.
2. “설비투자금액”이란 별표 1에 따른 건설투자비용, 기계장비구입비용, 근로환경 개선시설 투자비용을 말한다.
3. “투자계획”이란 투자기업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을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상의 투자금액과 상시 고용인원을 말한다.
4. “상시고용인원”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하고 당해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을 말한다. 이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따라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
 - 나.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
 -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 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
5. “연구개발업”이란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중분류로 연구개발업인 업종을 말한다.
6. “ICT기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소분류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과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7. “정보통신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대분류로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8.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9.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을 말한다.
10. “광역협력권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5호의 산업을 말한다.
11. “주력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4호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수립한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
12. “지역집중유치업종”이란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선정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의 별표 1의 업종을 말한다.
13. “첨단업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 업종을 말한다.
14.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8의2호, 같은 법 제17조부터 제17조의3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나.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15. “국가혁신융복합단지”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다.
16.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수립한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계획에 포함된 육성 대상 산업을 말한다.
17. “사후관리기간”이란 제26조제2항에 따라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기업에 보조금 및 융자금 정산을 통보한 날부터 5년까지를 말한다.

제2장 기업투자에 대한 지원

제3조(기업투자촉진지구의 지정) ① 「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준공인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분양실적이 70퍼센트 이하이거나 분양가능 면적이 33,058㎡ 이상이어야 한다.

②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외 소재 기업이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2. 기업이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제4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 대상) 시장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투자촉진지구 안에 부지매입 또는 임대 계약을 체결한 기업일 것
2.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연구소, ICT기업, 사회적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은 10억원 이상일 것
3. 투자 사업장에서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기업이 도 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한다)이 10명 이상일 것
4. 기업이 도 내의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가 아닐 것. 다만, 도 내 다른 시·군의 기존 사업장과 비교하

여 자산가치 및 상시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입지보조금)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에 부지매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5억원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 면적률에 따른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고용보조금)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에 10명을 초과하는 상시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12개월의 범위에서 기업당 3억원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훈련보조금)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이 10명 이상의 내국인을 신규로 고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10명을 초과하는 1명당 월 100만원까지 12개월의 범위에서 기업당 2억원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투자 모기업에의 파견교육,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설비보조금)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에 20억원(연구소·ICT기업·사회적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은 1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투자금액의 2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2억원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설비투자금액은 사업개시일부터 최장 3년 이내에 투자하는 비용을 말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이전보조금)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도 외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때에는 5억원을 초과하는 이전 설비가액의 2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2억원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설비가액은 별표 1에 따른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되는 기계장비의 보조금 신청일 기준 최종 기업회계기준 상의 유형자산가액을 말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사업개시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본점 이전 지원)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기업이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는 때에는 본점에 근무하는 10명을 초과하는 상시고용인원에 대하여 초과인원 1명당 30만원을 기업당 2억원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본점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대·중·소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대·중·소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기준과 보조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기업이 도 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기존 상시고용인원을 포함한다.

1. 대규모 투자기업은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50명 이상이어야 하며, 설비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100억원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
2. 중규모 투자기업은 투자금액이 45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30명 이상이어야 하며, 설비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80억원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
3. 소규모 투자기업은 투자금액이 40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이어야 하며, 설비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60억원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중·소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

1.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점수가 같은 지원기준 제17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 요건에 해당할 것
2. 투자계획의 완료 기한이 착공신고일부터 3년 이내일 것
3. 기업이 도 내의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가 아닐 것. 다만, 도 내 다른 시·군의 기존 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상시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지원은 대·중·소규모 투자금액의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부지매입 또는 임대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기업이 사업장을 착공한 것을 확인한 후 보조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30퍼센트는 별표 5에 따른 정산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정산결과 투자금액과 정산시점인 월의 상시고용인원이 모두 제1항의 지원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다.

제12조(신·증설기업 지원)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관내 기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설비투자금액의 3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5억원의 한도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투자금액에서 토지구입비는 제외한다.

1. 광역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첨단업종,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중 어느 하나를 영위할 것
 2. 신규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3.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4. 투자로 인하여 상시고용인원이 10퍼센트(최소 10명) 이상 증가한 경우
 5. 관내 기존사업장을 유지할 것
- ② 제1항에 의한 지원은 1회로 하며, 신설기업이 3년 이내에 증설하여 제1항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지급

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국내복귀기업 지원)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의 보조금 지원기준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경우에는 설비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20억원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의생명기업 등 지역전략산업 지원)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의생명기업에 대하여 지원기준은 별표 2와 지원대상 업종은 별표 3과 같다.

②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수소·나노융합·항공부품·드론산업, 식료품제조업, 관광사업 및 지식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식료품제조업 중 도축·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① 대규모 투자기업 중 연구소의 경우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고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일 것
2.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점수가 같은 지원기준 제17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요건에 해당할 것
3. 투자계획의 완료 기한이 착공신고일부터 3년 이내일 것
4. 기업이 도내의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가 아닐 것. 다만, 도 내 다른 시·군의 기존 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상시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하며, 총 지원액이 1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입지보조금 : 부지매입비의 30퍼센트 이내
 2. 정착지원금 : 투자 사업장에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에 대하여 1명당 월 1백만원씩 3년의 범위 이내
-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부지매입 또는 임대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기업이 사업장을 착공한 것을 확인한 후 보조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30퍼센트는 별표 5에 따른 정산 후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착지원금은 연도별 상시고용인원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정산 결과 투자금액과 정산시점인 월의 상시고용인원 중 어느 하나가 제1항제1호의 지원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액 환수할 수 있다.

제16조(관외기업의 관내이전 지원)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기업이 관외에 소재한 본점, 공장, 연구소 중 독립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

1. 광역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첨단업종, 연구개발업, 정보통신업 중 어느 하나를 영위할 것
2. 국내에서 연속으로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3.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일 것. 다만, 연구소, ICT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는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4. 기존사업장은 투자계획을 완료하기 전에 폐쇄 또는 매각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 종료 전 까지 매각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설비투자금액의 5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에 투자하는 기업이나,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투자하는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에는 지원 비율을 각각 1퍼센트씩 추가로 지원하며, 이전 후 신규로 고용한 인원에 따라 별표 4의 범위에서 최대 5퍼센트까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당 1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비를 지원받는 경우에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제17조(외국인투자의 요건) ①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정한 신성장동력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사업장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기계, 자동차, 항공우주, 조선, 생명공학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사업장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업외의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4.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각 목에서 규정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5.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영 제25조제1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6.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백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영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다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제18조(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지원) ① 조례 제17조에서 정하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의 지원대상과 지원하는 사업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학교 신축의 경우 총사업비(부지매입비, 건축비)의 100분의 50 이내
2. 외국인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100분의 50 이내
3. 의료시설 등 서비스 지원 시설을 신규로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사업비의 100분의 50 이내
4.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외국인학교 운영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사업타당성 분석 용역) 조례 제19조에 따른 사업타당성 분석 용역은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기업에 한정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4장 투자유치 지원체제

제20조(투자유치위원회) ① 김해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조례 제24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투자유치협약) 보조금 및 융자금의 지원 대상은 도 또는 시와 투자유치협약을 체결한 기업으로 하며, 도비를 지원받는 경우 시는 협약을 체결하기 전 도와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제22조(기금의 융자 대상 등) ① 조례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금의 융자 대상 및 범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대상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도 외 사업장의 도 내 이전, 도 내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도 내 다른 시·군의 기존 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상시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융자대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정보통신업과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일반물류터미널업, 물류창고업과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융자 한도액은 50억원으로 하고, 융자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② 제1항의 융자조건 및 지원기준은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장 부지매입을 위해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융자금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 별표 6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여 총점이 50점 이상이고, 재무건전성(평균대출액, 상시고용인원, 기업신용등급, 이자보상배율을 말한다) 평가 점수의 합이 35점 이상이어야 지원할 수 있다.

⑤ 융자금을 지원받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달성하여야 한다.

제23조(융자금 상환) ① 융자금의 원금은 5년 거치 후 3년간 동일하게 나누어 상환한다.

②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라 융자금의 조기상환 명령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원금에 조기상환 사유발생일부터 취급금융기관의 같은 조건의 기업 대출 평균 금리를 적용하여 이자를 부과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기한은 고지일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③ 조례 제30조제1항제2호, 제1항제4호, 제1항제5호, 제1항제6호, 제1항제8호의 경우 조기상환 사유 발생일은 융자금 지원일로 한다.

④ 상환 기한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은 취급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기업 대출 상환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더한다.

제5장 보조금의 지원 등

제24조(보조금 지원 등) ① 시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계획, 지원대상 여부 등을 검토하고 도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업에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때에는 투자기업으로부터 보조금 환수와 융자금 상환 등을 위하여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담보 확보 수단은 저당권, 가등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같은 항 제2호, 제6호 및 제7호의 증권 및 수익증권을 제외한다)로 하되, 같은 항 제3호 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기업의 사업이행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4호 보증서의 경우에는 사후관리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증기일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 경우, 융자금의 상환을 위한 담보 확보는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 규정」을 따른다.

제25조(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제한) 제5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2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는 기업은 그 지급결정의 내용, 조건 및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 및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보조금의 정산 등) ①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정산 신청서를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2개월 이내(다년도 사업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도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조금(융자금) 정산 결과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산검사가 완료되면 시장은 그 결과를 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이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투자계획의 추진 상황
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3. 지원 등의 취소·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지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용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조 또는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투자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하여 상·하반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도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매 반기 경과 후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교부받은 보조금액 또는 융자금액
2. 지급한 보조금액 또는 융자금액
3. 집행잔액 발생사유 및 조치사항
4. 투자계획 이행사항
5. 미이행 기업에 대한 지연기간, 지연사유, 환수여부 등 조치계획 및 조치사항 등

제28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① 조례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서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 또는 보조금이나 융자금 지원 계획 변경 등 귀책사유가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받은 해당 기업 외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하며, 그 환수 금액 산정은 별표 7을 따른다.

③ 시장은 제22조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사후관리기간 동안 정산 시의 상시고용인원을 유지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연평균 상시고용 미달률만큼 취급금융기관의 같은 조건 기업대출 평균금리를 적용하여 정산통보일부부터 기산한 이자를 부과하되, 상시고용인원이 미달한 해가 3개년 미만이고 사후관리기간 해에 상시고용인원을 회복한 경우에는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29조(투자유치자문관) ① 조례 제35조제1항에 따라 김해시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은 관련 업무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국내외 투자전문기관의 전문가
2. 대학 교수
3.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의 임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자문관은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 투자기업을 발굴하고, 투자유치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하며, 정보를 수집·제공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35조제2항에 따라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유치를 위한 기본적인 활동비
2.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출장 여비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투자유치 활동과 관련된 비용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 기준, 지급 한도, 지급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

제30조(투자유치 기여자 포상) ① 조례 제32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 기업 또는 해외 자본의 유치금액이 건당 5백만달러 이상인 경우
2. 국내 기업 또는 자본의 관내 유치금액이 건당 50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의 기업유치 실적이 있는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 및 실적가점 관련 규정에 따른 가점을 주거나 희망부서에 우선 배치할 수 있다.

제31조(준용)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설비투자금액의 인정범위

구분	인정범위
건설투자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사업장의 건설투자비용(설계비, 기반시설설치비 포함) * 건설투자비용은 「한국감정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감정원이 발행하는 「건물신축단가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 * 증설인 경우에는 증설부분 건축물만 해당 * 건물(폐건물 포함) 매입비용, 폐건물에 속해 있던 기계장비 매입비용 및 철거비용은 불인정
기계장비구입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투자사업장에 구축하는 고정형 기계장비 구입비용. 다만, 이동형 기계장비라도 현장평가를 통해 생산에 필수적인 설비라 인정되는 경우는 포함(내용년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원 이상 기계장비만 해당) * 지게차, 연구용 기자재, S/W 구입비(상품개발에 필수적인 S/W 및 이의 구동에 필요한 H/W)는 포함(내용년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원 이상만 해당) * 인건비, 원자재, 금형, 공구·기구·비품, 사무용 기기, 가구 및 집기, 조경 수목, 소모품, 미술품, 장식품, 운영비, 기계장비의 리스 또는 렌탈 비용 등은 불인정
근로환경 개선시설 투자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숙사, 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체육시설,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및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의 건설투자비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6의2호, 제7호 및 제9호에 의해 지정된 시설(다만, 보육시설은 제외) * 건설투자 및 기계장비구입 비용의 10% 범위 내에서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

※ 설비투자금액은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해야 함(간이세금계산서는 인정 불가)

[별표 2]

의생명기업 지원 기준

조 건	지원내용	지원한도
투자금액 20억원 이상이고, 사업개시 이후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투자금액의 10% 이내	3억원
투자금액 30억원 이상이고, 사업개시 이후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4억원
투자금액 40억원 이상이고, 사업개시 이후 상시고용인원 25명 이상		6억원

※ 투자금액의 범위 : 부지매입비 + 건축비(거주용제외) + 시설장비구입비

수소·나노융합·항공기부품·드론산업 및 식료품제조업 지원 기준

구 분	조 건	지원내용	지원한도
시설보조금	투자금액 50억원 이상이고, 사업개시 이후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설비투자금액의 20% 이내	10억원
	투자금액 100억원 이상이고, 사업개시 이후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15억원
	투자금액 200억원 이상이고, 사업개시 이후 상시고용인원 40명 이상		20억원
고용보조금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초과 1명당 월100만원이내 12개월이내	3억원
교육훈련 보조금	신규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교육훈련실시	초과 1명당 월100만원이내 12개월이내	2억원

관광사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지원 기준

구 분	조 건	지원내용	지원한도
시설보조금	투자금액 100억원 이상이고, 사업개시 이후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설비투자금액의 20% 이내	10억원
	투자금액 300억원 이상이고, 사업개시 이후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		15억원
	투자금액 500억원 이상이고, 사업개시 이후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20억원
고용보조금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초과 1명당 월50만원이내 12개월이내	3억원
교육훈련 보조금	신규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교육훈련실시	초과 1명당 월50만원이내 12개월이내	2억원

[별표 3]

의생명기업 보조금 지원대상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2017.1.13. 통계청 고시 제2017-13)에 따른 업종분류

제조업 중분류		지원업종(세세분류)	
분류번호	업 종 명	분류번호	업 종 명
C10	식료품 제조업	10797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0423	화장품 제조업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1101	의약품 화합물 및 향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20	한약약품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품관련제품 제조업
		21230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91	치과용 기기 제조업
		27192	정형 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27194	의료용 가구 제조업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C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222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3D프린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의료용 로봇 제조업)

[별표 4]

신규고용인원에 따른 추가 지원범위

신규 고용인원수	추가 지원비율
10명 이상 20명 미만	1%
20명 이상 30명 미만	2%
30명 이상 40명 미만	3%
40명 이상 50명 미만	4%
50명 이상	5%

* 신규고용인원 :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별표 5]

정산금액 산정기준

구 분	산정 방식
대·중·소 규모투자 특별지원	$* \text{정산금액} = \text{보조금액} \times (1 - \text{투자금액 미달률}(\text{고용인원 미달률}))$ $* \text{투자금액 미달률} = \frac{\text{투자계획금액} - \text{실제 투자금액}}{\text{투자계획금액}}$ $* \text{고용인원 미달률} = \frac{\text{사업계획상 상시고용인원} - \text{정산시점인 월의 상시고용인원}}{\text{사업계획상 상시고용인원}}$ <p>※ 정산금액이 1차 지원금보다 작은 경우 그 차액만큼 환수하며, 투자금액과 정산신청시점인 월의 상시고용인원(정산신청일이 속한 달의 1개월 평균 상시고용인원)이 모두 지원조건 요구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정산금액은 0원으로 처리한다.</p>
연구소 특별지원	$* \text{정산금액} = \text{보조금액} \times \left(1 - \frac{\text{투자금액 미달률} + \text{고용인원 미달률}}{2}\right)$ $* \text{투자금액 미달률} = \frac{\text{투자계획금액} - \text{실제 투자금액}}{\text{투자계획금액}}$ $* \text{고용인원 미달률} = \frac{\text{사업계획상 상시고용인원} - \text{정산시점인 월의 상시고용인원}}{\text{사업계획상 상시고용인원}}$ <p>※ 정산금액이 1차 지원금보다 작은 경우 그 차액만큼 환수하며, 투자금액과 정산신청시점인 월의 상시고용인원(정산신청일이 속한 달의 1개월 평균 상시고용인원) 중 어느 하나가 지원조건 요구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정산금액은 0원으로 처리한다.</p>

[별표 6]

기금융자 타당성 평가표

① 최근 1년 이상 ~ 3년 미만 평균매출액

평균매출액		점 수
일 반	연구소·연구개발업·ICT기업·사회적기업	
10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15
75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3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2
50억원 이상 75억원 미만	25억원 이상 35억원 미만	9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25억원 미만	6
30억원 미만	15억원 미만	3

* 최근 3년미만 사업실적의 평균매출
(직전1년도매출액 + 직전2년도 매출액) ÷ 2(단, 사업기간이 1년인 기업은 직전1년도 매출액)

② 상시고용인원

상시고용인원		점수
일 반	연구소·연구개발업·ICT기업·사회적기업	
25명 이상	20명 이상	15
20명 이상 25명 미만	15명 이상 20명 미만	12
15명 이상 20명 미만	10명 이상 15명 미만	9
10명 이상 15명 미만	5명 이상 10명 미만	6
5명 이상 10명 미만	5명 미만	3

년·월							평균
상시고용인원							
년·월							
상시고용인원							

③ 기업신용등급

신용등급	점수
BBB- 이상	20
BB- 이상	16
B0 이상	12
CCC- 이상	8
CCC-미만	4

※ 융자금 신청시 유효기간 내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의 기업 등급

④ 이자보상배율

이자보상배율	점수
4 이상	20
3 이상 ~ 4 미만	16
2 이상 ~ 3 미만	12
1 이상 ~ 2 미만	8
1 미만	4

* 이자보상배율 = $\frac{\text{기업의 영업 이익액}}{\text{기업의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 최근년도 재무제표(손익계산서)상 영업손익 및 영업외비용의 이자비용

⑤ 신규투자금액

신규투자금액	점수(10점 만점)
설비투자금액	5억원당 1점

※ 연구소·연구개발업·ICT기업·사회적기업은 2억원당 1점

⑥ 투자기간

신청일로부터 투자완료일	점수
1년 이내	10
1.5년 이내	8
2년 이내	6
2.5년 이내	4
3년 이내	2

⑦ 신규고용에 따른 가점

신규고용	가점(10점 상한)
투자 후 상시고용인원 - 신청 당시 상시고용인원	* 2명당 1점

[별표 7]

보조금 환수 기준

구분	산정 방식
전액 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교부 조건 (교부결정 사항 포함) 및 승인사항을 위반한 경우 (조례 제30조제1항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9호)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보조금 수령기업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였을 경우(조례 제30조제1항제2호)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른 김해시장의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부분 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관리기간 중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정산 시 상시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조례 제30조제1항제7호) (1) 원칙 : 사후관리기간 종료시점에 사후관리기간 동안 투자기업 고용의 연평균 미달률을 계산하여 환수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 환수액 = 보조금 × 연평균 미달률 * 연평균 미달률 = 정산 시 상시고용인원에 미달한 해 미달률의 합/5년 * 미달률 = 정산 시 상시고용인원 - 상시고용인원/정산 시 상시고용인원 </div> ※ 만일 사후관리기간 중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지원조건 요구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해의 미달률은 100%로 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 10명 대·중·소규모투자 특별지원 : 100~150명 또는 정산 시 상시고용인원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 100명 국내복귀기업 지원 : 10명 의생명기업 등 지원 : 10명 ~ 100명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보조금 : 20명(연구소, ICT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은 10명) ※ 미달률은 0보다 작을 수 없음 (2) 예외(미환수) : ① 정산 시 고용인원에 미달한 해가 3개년 미만이고, 동시에 ② 마지막 사업이행기간 해에 정산 시 상시고용인원을 회복한 경우 ▶ 사후관리기간 내 휴·폐업(조례 제30조제1항제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불이행 기간에 비례하여 환수

보조금 (용자금) 신청서	<input type="checkbox"/>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대·중·소규모투자 특별지원 <input type="checkbox"/> 국내복귀기업 지원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부지매입비 용자금		<input type="checkbox"/> 본점 이전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신·증설기업 지원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의생명기업 등 지원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관외기업 관내이전 지원 보조금	
	지원대상 (투자사업자)	기업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본사 소재지			전화번호
지원내용	보조금(용자금) 유형		기업의 구분	
	<input type="checkbox"/> 입지보조금 <input type="checkbox"/> 고용보조금 <input type="checkbox"/> 이전보조금 <input type="checkbox"/> 대·중·소규모 특별지원 <input type="checkbox"/> 국내복귀기업 지원 <input type="checkbox"/>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input type="checkbox"/> 부지매입 용자금		<input type="checkbox"/> 설비보조금 <input type="checkbox"/> 교육훈련보조금 <input type="checkbox"/> 본점 이전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신·증설 기업 지원 <input type="checkbox"/> 의생명 등 지원 <input type="checkbox"/> 관외기업 관내이전 지원	
투자사업지 유형	입지 유형		입주 유형	
	<input type="checkbox"/> 산업단지 <input type="checkbox"/> 개별입지		<input type="checkbox"/> 매입 <input type="checkbox"/> 임대	
투자사업장 유형	<input type="checkbox"/> 공장 <input type="checkbox"/> 본점 <input type="checkbox"/> 연구소 <input type="checkbox"/> 기타()			
유치 및 투자일정	법인성립일	(최초)공장등록일	MOU 체결일	보조금 접수일(기업→시)
	'00.00.00	'00.00.00	'00.00.00	'00.00.00
	토지매입(임대)계약 체결일	착공(예정)일	투자완료(예정)일	총투자기간 (착공~투자완료)
'00.00.00	'00.00.00	'00.00.00	00년 00개월	
사업장의 내용	소재지		부지면적	건축연면적
기존사업장			m ²	m ²
			m ²	m ²
			m ²	m ²
투자사업장			m ²	m ²
업종	업종명		분류번호 (KSIC 5단위)	생산품
기존사업장				
투자사업장				
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 상시고용인원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명	명	명	
투자금액	총 투자금액 (A=B+C)	토지 매입가액 (B)	설비투자금액(C=D+E)	
			건설투자비용+기계장비 구입비용(D)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E)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보조(융자)금액	보조금(융자금) 총액		도비 분담금		시비 분담금	
	계	천원	계	천원	계	천원
	OO 보조금	천원		천원		천원
	OO 보조금	천원		천원		천원
	OO 보조금	천원		천원		천원
	보조금(융자금) 산출식					
	OO 보조금					
	OO 보조금					
	OO 보조금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확보방안	<input type="checkbox"/> 보증보험증권 <input type="checkbox"/> 저당권 설정 <input type="checkbox"/> 가등기 <input type="checkbox"/> 기타()					
투자사업장 담보대출 계획 여부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지원비율 특례사항	<input type="checkbox"/> 융복합단지 대표산업 <input type="checkbox"/> 고용인센티브(%)					
기 지원사항	유사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항				보조금 수령금액	
					총액	천원
					국비	천원
					도비	천원

「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금(융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 해 시 장 귀하

구 비 서 류	신청인 제출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본점 이전 보조금, 대·중·소규모 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신·증설기업 지원 보조금, 국내복귀기업 지원 보조금, 의생명기업 등 지원 보조금,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관외기업의 관내이전 지원 보조금			
	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시행규칙 제2조제4호의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교육훈련실적증명서 1부(교육훈련보조금의 경우에 한함)		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3.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대·중·소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부지매입비 융자금			
	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시행규칙 제2조제4호의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연구소 정착지원금에 한함) 4. 시행규칙 제11조 등에 따른 사전 타당성평가를 위한 서류 각 1부 5. 투자이행 협약서 1부		1. 법인등기부등본 2.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신고)서 3. 표준재무제표증명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사업비 지원신청서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법인소재지)		전화번호		
			F A X		
사업유형	<input type="checkbox"/> 학교시설 <input type="checkbox"/> 주택 <input type="checkbox"/> 지원시설				
	소재지				
	면적	부지	건축물		
	건물구조			m ²	
	건축허가일		준공일		
투자유형	<input type="checkbox"/> 신축 <input type="checkbox"/> 기존건물 매입				
투자금액	금 원 (USD 상당)				
보조금신청액					
학교시설 :	원	주택 :	원	지원시설 :	원
「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김해시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		
			수수료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외국인학교 운영 보조금 신청서

학교명 (국적)		설립자 성명 (국적)	
학교장 성명 (국적)		본국 학력인정 여부	
소재지			
설립년월일		설립인가번호	
학생수	총 인원	명 (외국인학생수	명)
교사수	총 인원	명 (외국인교사수	명)
보조금 신청액	원		

「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학교 운영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김해시장 귀하

- ※ 구비서류
1. 설립인가증 사본 1부.
 2. 외국인학생 및 교사 현황 자료
 3. 전년도 수입 및 지출현황
 4. 수입전망 및 운영비 집행계획

보조금(융자금) 정산 신청서

기업명	대표자		
보조금(융자금) 유형	<input type="checkbox"/>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대·중·소규모투자 특별지원 <input type="checkbox"/> 국내복귀기업 지원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부지매입비 융자금	<input type="checkbox"/> 본점 이전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신·증설기업 지원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의생명기업 등 지원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관외기업 관내이전 지원 보조금	
보조금(융자금) 신청일	보조금(융자금) 지원결정 통지일		
착공신고일(계획)	착공신고일(실제)		
투자완료일(계획)	투자완료일(실제)		
보조금(융자금) 수령일자	보조금(융자금) 유형		
기존사업장	<input type="checkbox"/> 폐쇄(청산) <input type="checkbox"/> 매각(양도) <input type="checkbox"/> 유지 <input type="checkbox"/> 계획에 따른 축소		
보조금(융자금) 결정 금액	천원	보조금(융자금) 명	지원 금액
			천원
			천원
보조금(융자금) 교부 금액	천원	보조금(융자금) 명	지원 금액
			천원
			천원

구분		보조금(융자금) 지원 결정시	투자 완료시
투자 금액	부지매입비	천원	천원
	설비투자금	천원	천원
상시고용인원(전체)		명	명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명	명
신규 상시고용인원		명	명

사업이행여부 자체평가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일부 부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사유
-------------	--

「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융자금) 정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해시장 귀하

보조금(융자금) 정산 결과서

기업명	대표자		
보조금(융자금) 유형	<input type="checkbox"/>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부지매입비 융자금	<input type="checkbox"/>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도외 이전기업 지원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본점 이전 보조금	
보조금(융자금) 신청일	보조금(융자금) 지원결정 통지일		
착공신고일(계획)	착공신고일(실제)		
투자완료일(계획)	투자완료일(실제)		
보조금(융자금) 지급일자			
기존사업장	<input type="checkbox"/> 폐쇄(청산) <input type="checkbox"/> 매각(양도) <input type="checkbox"/> 유지 <input type="checkbox"/> 계획에 따른 축소		

구분		보조금(융자금) 지원 결정시	투자 완료시
투자 금액	부지매입비	천원	천원
	설비투자금	천원	천원
상시고용인원(전체)		명	명
신규 상시고용인원		명	명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명	명

사업이행여부 평가	<input type="checkbox"/> 완료 <input type="checkbox"/> 일부 완료 <input type="checkbox"/> 일부 환수 <input type="checkbox"/> 전액 환수 사유
-----------	--

보조금(융자금) 교부 결정금액 (A)	천원	OO 보조금	도 비	천원
			시 비	천원
		OO 보조금	도 비	천원
			시 비	천원
1차 지급금액 (B)	천원	OO 보조금	도 비	천원
			시 비	천원
		OO 보조금	도 비	천원
			시 비	천원
미지급금액 (C=A-B)	천원	OO 보조금	도 비	천원
			시 비	천원
		OO 보조금	도 비	천원
			시 비	천원
정산금액 (D)	천원	OO 보조금	도 비	천원
			시 비	천원
		OO 보조금	도 비	천원
			시 비	천원
산정 기준				
2차 지급금액 (E=D-B)	천원	OO 보조금	도 비	천원
			시 비	천원
		OO 보조금	도 비	천원
			시 비	천원
집행잔액 (A-(B+E))	천원	OO 보조금	도 비	천원
			시 비	천원
		OO 보조금	도 비	천원
			시 비	천원

「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융자금) 정산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시장 (관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사 업(투자) 계 획 서

작성 일 :

기업체명 : _____ (인)

대표자 :

귀사에서 제출한 모든 자료는 우리 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인센티브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만 활용하고, 모든 기업비밀은 보장됩니다.

다만, 신청서에 거짓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신청서는 사실을 근거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성된 내용은 심사와 직접 관계되므로 가능하면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서식에 맞지 않는 내용은 별도자료로 제출 가능

투자기업 개요

기업체명		대표자	
설립일자		법인(주민)등록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주요 생산품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input type="checkbox"/> 보유 <input type="checkbox"/> 없음	건설업명	
회 사 소 개			

산 업 분 석

--

생산공정도

생산공정도	생산공장 요약 설명
↓	
↓	
↓	
↓	
↓	

투자 설비 내역서

품 명	규격(용량)	내용년수	단위	수량	단 가	금 액	비고(용도)

투자 개요

기존 사업장 주소	본사		소유 / 임차		
	공장		소유 / 임차		
	연구소		소유 / 임차		
투자지 주소			소유 / 임차		
투자기간					
토지매입계약체결일		착공(예정)일			
공장등록(예정)일 *사업개시(예정)일		투자완료(예정)일			
투자면적 (단위 : m²)					
구 분	부 지	건물용지	건물연면적		
기존사업장					
투자사업장					
계					
투자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계	N	N + 1	N + 2	N + 3
계					
토지 매입가액					
설비투자 금액	소계				
	건설투자				
	기계장비				
	근로환경				
설비투자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별첨					
건설투자					
기계장비					
근로환경					

투자의 사유

투자의 사유

자금조달 계획

자금자원 조달계획 (단위 : 천원)						
투자금액	자기자본		외부조달		계	
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						
자기자본						
외부자본	투자사업장 담보대출 계획 여부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참고사항						
부채비율	총부채(A)		자기자본(B)		부채비율(A/B)	%
순유동자산	유동자산(A)		유동부채(B)		순유동자산(A-B)	

고용 계획

고용계획 (단위 : 명)						
구분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A)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B)				투자 후(A+B)
		N* *신청년도	N+1	N+2	N+3	
계						
연구·개발						
사무·영업						
생산						
고용 사유						
연구·개발직						
사무·영업직						
생산직						

최근 3년간 주요 경영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	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당기 순이익	영업 이익	이자 비용
N*-1 *신청년도							
N-2							
N-3							
최근 3년 평균 증가율							

신규투자(안)의 사업성 전망

(단위 : 백만원, %)

구분	추정 재무제표(예상액) [(사업개시일+1년) ~ 투자완료 후 5년]								
	N*+1 *사업개시일	N+2	N+3	N+4	N+5	N+6	N+7	N+8	
매출액									
영업이익									
연평균 증가율(CAGR)		매출액			%		영업이익		%
사업성 전망									

신청지역을 투자대상으로 선정 한 이유(대체 투자 지역과 비교시 장·단점 포함)

향후 5년간 지역 및 지역경제 기여효과(직·간접 고용규모, 세금납부, 원부자제 조달선 및 제품 판매선에 대한 전후방 연관효과 등 포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보조금(융자금) 투자이행확약서

○ 관련 규정 : 「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등

보조금(융자금) 신청 당시 제출한 투자계획 등에 따른 투자규모, 고용규모, 투자완료일 등을 관련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며, 「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정산할 것을 확약합니다.

○ 투자사업장(소재지)	
○ 투자기간	~ (년)
○ 총 투자규모	000 천원
- 입지 투자	000 천원
- 설비 투자	000 천원
○ 고용계획(명)	00 명
○ 보조금 지원규모	000 천원
- ○○ 보조금	000 천원
- ○○ 보조금	000 천원

관련 규정의 지원 대상, 요건, 절차, 보조금의 환수, 융자금의 조기상환, 융자금의 이자부과 등의 내용을 확인하였고, 이를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만약, 위 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위반하여 보조금(융자금) 환수(조기상환) 결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환수(조기상환)에 해당하는 금액(이자 포함)을 해당 지자체에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확 인 일 : 20__년 __월 __일

확 약 자 : (기업명) (자필) (직인)

(대표자) (자필) (서명)

◇ 제안이유

○ 「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시기 조정(제3조)
- 본점 관내이전 시에는 본점 근무인원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지원금액 확대(제10조)
- 대·중·소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보조금 지원조건 등 신설(제11조)
- 기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신·증설기업 지원에 대한 조항 신설(제12조)
- 국내복귀기업 지원에 대한 조항 신설(제13조)
- 의생명기업 등 지원 조항 신설(제14조)
-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신설(제15조)
- 관외기업의 관내이전 지원 신설(제16조)

제530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김해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김해시장 허성곤

2019년 10월 4일

김해시 규칙 제662호

김해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김해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 전단 중 “법, 영, 조례”를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김해시 시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한다.

제9조 중 “영 제39조”를 “영 제37조”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한국증권거래소”를 각각 “한국거래소”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 법제처 권고안에 따라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개정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인용조문을 수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불필요한 규정 삭제(제3조)
- 인용조문 수정 및 명칭 변경(제9조, 제10조)
 - 조문 수정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9조 → 제37조
 - 명칭 변경 : 한국증권거래소 → 한국거래소

제530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김해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김해시장 허성곤

2019년 10월 4일

김해시 규칙 제663호

김해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

김해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김해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0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지방세에 대한 정확한 부과·징수를 위하여 조사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 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조사공무원”이란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세무공무원을 말한다.
3. “조사책임자”란 조사공무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4. “일반조사”란 특정 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 여부, 과세표준 및 세율의 적정 여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적정 여부 등(이하 “과세 적정성”이라 한다)을 검증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5. “특별조사”란 세금을 탈루한 방법이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6. “직접조사”란 납세자의 사무소,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에 출장하여 직접 해당 납세자 또는 그 관련이 있는 자 등을 상대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7. “서면조사”란 직접조사 이외에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 등으로 과세 적정성을 검증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8. “전부조사”란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기간에 대하여 과세 적정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증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9. “부분조사”란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 일부에 대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0. “전산분석”이란 세원 관리를 위하여 납세자의 지방세 신고내용, 납부 상황 등을 보유·관리하는 전산자료와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수집하는 과세자료 등에 대한 종합분석을 말한다.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세무조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신의성실의 원칙: 세무조사를 수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특히 납세자에게 이미 공시한 사항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근거과세의 원칙: 세무조사와 부과권의 행사는 법인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야 하고 이를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조사비례의 원칙: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4. 납세자별 구분조사 원칙: 세무조사는 신고의 성실도와 업종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조사공무원(상급관리자를 포함한다)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 ① 시장은 납세자가 김해시인 지방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수행한다. 다만, 부당하게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는 등의 경우에는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세무조사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 ① 시장은 납세자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사업장(지점, 제조장, 직매장, 하치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재지가 납세지 관할을 달리하여 세무조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신속히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세무조사에 관하여 지방세관계법 등 다른 법령 및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조사대상의 선정

제8조(조사대상자 선정) 조사대상자는 지방세에 관한 신고·납부의 성실도 및 업종 등을 기준으로 일반조사와 특별조사로 구분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선정기준의 공정성과 타당성 유지)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납세자의 성실신고 존중) 시장은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 11조(일반조사 대상자) ① 시장은 해당 납세자의 세원종합관리상황과 서면신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반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제4항의 직접조사 대상은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정기선정 대상 건수가 100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위원이 세무조사 대상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을 표기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하여야 한다.

③ 제5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도지사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하였으나 도지사 관할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시장이 세무조사를 한다.

④ 시장은 일반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조사를 할 수 있다.

1. 서면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2.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인 법인 또는 종업원의 급여총액이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5조의 2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상인 경우
 3. 1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4.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감면받은 경우
 5.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의뢰받은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⑤ 동일한 납세자에 대한 중복조사방지, 성실한 신고·납부 풍토 조성, 경제·사회정책의 효율적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공정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사대상을 제외할 수 있다.

제 12조(특별조사 대상자) ① 특별조사 대상자는 탈세 정보에 의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거나 탈루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자로 하되, 그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8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특별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탈루유형,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계획과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 13조(부분조사 대상자) 부분조사 대상자는 세원의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 일부 검증으로 조사목적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96조제5항(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위장·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 14조(영세·성실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1. 최근 5년간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다만, 최근 5년간 3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소기업은 제외한다.
3.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중 중소기업
4.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인증된 고용우수 중소기업
5. 「김해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호에 따라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해당 법인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2. 건설업으로 등록된 법인이 연간 도급금액 100억원 이상의 시공을 하는 경우
3. 법인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

제3장 세무조사 실시

제 15조(중복조사 금지) ① 동일한 납세자의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 시작 후에도 중복조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세무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전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부분조사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한 것으로 본다.

제 16조(조사범위 등의 준수)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범위·조사기간 및 조사방법을 미리 정하고 조사공무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17조(조사범위 확대의 제한) ① 조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중에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없으며,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법 제76조제3항의 납세자보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세목 등과 관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구체적인 탈세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②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18조(조사방법) 세무조사는 조사대상자의 납세성실도 수준, 사업규모, 업종, 과세자료 분석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직접조사를 하는 때에는 납세자가 비치·기록하고 있는 장부 및 그와 관련된 증빙서류(전산조직에 의해 장부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전자기록을 포함한다) 조사와 그 장부의 진실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각종 현황 조사, 거래처 조사 또는 현장 확인
2. 서면조사를 하는 때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과세의 적정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조사방법을 준용
3. 부분조사를 하는 때 지방세의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 일부의 과세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조사방법을 준용

제 19조(조사장소의 한정)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0조(조사시간의 제한) 납세자를 직접 상대로 하는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일과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요구가 있거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일과시간 외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21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및 영 제5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사전통지 생략이유 등을 기재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 22조(세무조사의 연기신청) ① 제21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영 제5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 신청을 하려는 자는 영 제54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3조(조사기간) 시장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사기간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제 24조(조사기간의 계산) 조사기간의 계산은 조사시작일(최종 자료제출일부터 기산한다)부터 조사종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조사기간 중 토요일·공휴일 등을 포함한다.

제 25조(조사기간 연장의 제한) 세무조사를 시작한 후 조사기간 내에 법 제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은 그 사유가 종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와 관련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제 26조(수색, 압수 등의 금지) ①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납세자의 주택 또는 사무실 등을 수색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압수·영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102조부터 제107조까지의 범칙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발견한 경우
2. 비밀장부 등 범칙증거를 발견한 경우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조사공무원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지방세 범칙사건조사로의 전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장부·서류 등을 압수·영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압수·영치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압수·영치목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 27조(장부, 서류 등의 일시보관) ① 특별조사를 할 때에는 탈세 혐의에 대한 증거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장부·서류 등을 일시보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부·서류 등을 일시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88호서식의 일시보관증과 시행규칙 별지 제89호서식의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부·서류 등의 일시보관은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제 28조(조사권 남용 조사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 시장은 정당한 절차와 적법한 방법이 아닌 수단으로 조사권을 남용한 조사공무원과 조사책임자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29조(조사권 행사의 제한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권리) ① 시장은 조사대상 납세자 및 그와 관련된 자에 대한 조사권의 행사를 해당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석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조사사무관리

제 30조(조사계획 수립) ① 시장은 업무량과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일 납세자에게 중복조사를 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 31조(조사준비)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의 시작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분석·검토하여 효율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신고·납부 내용
2. 전산분석 자료
3. 행정기관 자료
4. 그 밖의 정보 및 수집자료 등

② 조사공무원은 준비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여 준비조사서를 작성하고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사책임자는 효율적이고 공정한 조사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사공무원을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제32조(부분조사 실시) ① 시장은 납세자의 편의 및 조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및 탈세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33조(조사지휘) ① 모든 세무조사는 조사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실시한다.

② 조사책임자가 장기간 조사지휘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 대리자가 조사책임자가 된다.

제34조(조사의 시작 등)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현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하여야 하며, 조사사유·조사기간 및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낭독하여야 하는 납세자권리현장의 요지와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을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35조(조사내용 진일보고) 조사공무원은 조사진행 사항을 조사책임자에게 중간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조사진행 관리) ① 조사책임자는 조사대상에 대한 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할 사항과 새로운 문제점에 대하여 조사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준비조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조사책임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조사하고, 그 조사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사대상자가 서면조사서 등 자료제출을 거부·기피하는 경우에는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④ 조사공무원은 과세의 근거자료를 확보하여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여야 한다.

제37조(조사의 종결)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내용을 정리하여 조사책임자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조사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에게 조사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납세자의 권리구제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어야 한다.

제38조(세무조사 결과통지)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치는 때에는 7일 이내에 법 제85조 및 영 제5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법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결과를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영 제5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39조(과세정보 통보와 조사기법의 개발보급) ① 조사과정에서 파악되는 각종 과세정보는 과세자료처리대장에 등재하고, 국세 또는 과세 관할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과세자료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점이 시정될 수 있도록 시장과 도지사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조사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하여 조사기법 사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40조(세무조사 명부 및 자료 관리) ① 시장은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현황·조사연혁 및 폐업사실 등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중복 세무조사 방지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다음 각 호를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대상자
2. 세무조사 기간·내용·추징세액·추징사유·불복내용 등
3. 납세자별·세목별 세무조사 결과대장 관리 등 필요한 업무

③ 시장은 세무조사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최적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41조(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 ① 시장은 세무공무원의 증표를 조사공무원별로 1매씩 발급하고, 퇴직·전출 등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별표의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사공무원 행동수칙

1. 조사공무원의 기본자세

- 가.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한다.
- 나.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세무조사로 인한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다. 조사공무원은 공평과세 실현 및 재정수입 조달의 주역이라는 긍지와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라.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으로서의 자질향상과 조사기법의 개발을 위하여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 마. 조사공무원은 대외적으로 세무공무원의 거울이 됨을 명심하고 조사에 임하여서는 납세자를 존중하고 불필요한 언행을 삼가며 예의바른 자세와 존댓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 바. 조사공무원은 관련법규를 적용함에 있어 무리하게 확대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법률에 정하여진 경우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아. 조사공무원은 어떠한 청탁이나 부정·불의와도 타협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착수 전, 조사진행 중, 조사종결 후 그 어느 때에도 어떠한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품수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사착수 전에 지켜야 할 사항

- 가.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수집·분석하는 등 준비조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나.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 등 관련정보가 사전에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다. 조사책임자는 조사공무원에게 조사출장 전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라. 조사공무원은 소정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조사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출장에 임하여야 한다.

3. 조사를 시작할 때 지켜야 할 사항

- 가. 조사공무원은 조사현장에 도착하면 조사착수 상황, 특이사항 등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나. 세무조사를 착수할 때에는 조사공무원 증표를 제시하고, 납세자권리 현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납세자에게 조사사유, 조사기간 및 범위를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 다.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설명으로 납세자의 이해를 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지휘에 따라야 한다.

4. 조사 진행 중에 지켜야 할 사항

- 가. 조사공무원은 조사업무 수행 중에 조사목적을 벗어난 사적 편의의 제공을 절대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 나. 범칙사건조사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납세자의 주택이나 사업장 또는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현장에서 발견된 비밀장부나 주요 증빙서류를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받았을 경우에는 조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일시보관할 수 있다.
- 다.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에 의한 조사방법·조사범위·조사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만, 조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라. 조사내용에 대하여 납세자 또는 납세자가 위임한 세무대리인이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조사현장에서 그 옳고 그름을 다투어서는 아니 된다.
- 마. 조사내용의 이견에 대하여 납세자 측의 주장이 옳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여야 하며, 납세자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되,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바. 조사공무원은 다툼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관련 증빙을 확인하여 납세자의 불복청구나 쟁송에 대비하여야 한다.
- 사. 조사공무원은 매일의 조사를 마치면서 납세자의 협조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하여야 하며, 다음 조사일시를 명확히 예고하되 약속일시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납세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 아. 조사공무원은 매일의 조사내용을 조사책임자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앞으로의 조사방향을 지시받아야 한다.
- 자. 조사공무원은 조사와 관련하여 대내외로부터의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경우 이를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조사를 마칠 때 지켜야 할 사항

- 가. 조사공무원은 조사를 마칠 때에는 납세자에게 조사가 종결되었음을 알리고, 조사기간 동안 성실히 조사에 협조하여 준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하여야 한다.
- 나. 조사공무원은 조사 중에 제출받은 조사 관련 장부와 증빙서류를 납세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와 증빙서류의 반환으로 과세에 중대한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일정기간 보관할 수 있다.
- 다. 조사공무원은 조사종결 즉시 종결복명을 하고, 조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라. 조사공무원은 결정 전 조사내용 통지 전까지 조사 적출내용 등 조사진행 사항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한다.
- 마. 납세자가 조사내용의 통지를 받고 그 내용에 이의가 있어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바.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과세자료 또는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도상의 문제점을 발견할 경우에는 세법 등 개정 건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사. 납세자가 권리행사(불복청구 등 세법에 의하여 납세자가 갖는 권리의 행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련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압수·영치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법인번호(사업자등록번호) :

「김해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 납세자에 대해 붙임 목록의 서류 등을 아래와 같이 압수·영치합니다.

압수·영치사유						
압수·영치기관						
압수·영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압수영치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입 회 인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인 등이 서명날인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경우에 사유를 작성						

○ 붙임 : 압수·영치목록

년 월 일

김 해 시 장

직인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성과물을 사용할 수 있음.

[별지 제2호서식]

압수·영치목록

일련번호	물 건 명	수량	제 출 자	소 유 자	비고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성과물을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이유

○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고 효율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객관성 확보를 위해 연간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 건수가 100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제11조)

○ 특정부분만 한정·조사할 수 있는 부분조사 규정 신설(제13조, 제32조)

○ 세무조사 시작 전 납세자권리현장 요지 낭독 및 조사사유 등 설명 의무 부여로 납세자 권리보호(제34조)

○ 세무조사 결과통지 기한 신설(제38조)

제530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김해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김해시장 허성곤

2019년 10월 4일

김해시 규칙 제664호

김해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권한을 김해시장에게 위임함에 따라 김해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김해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자연재해업무 담당 공무원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개최사실과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 위원 중 사안별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안별로 지정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이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3조의 사항을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심의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위원장은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를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 사업을 심의하여야 한다.

- ② 위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1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제3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 12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및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 회의 시 의견 등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 14조(심의결과의 결정 및 보관) ① 제3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1. 원안 통과 : 심의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2. 조건부 협의 : 심의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3. 재작성 : 심의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심의의견
4. 심의결과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15조(수당 및 여비)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명칭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및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규정함이 적법하므로 기존 「김해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제2조)
-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제3조, 제4조)
- 위원의 임기 및 해촉(제5조, 제6조)
- 위원회의 운영(제9조)
- 의견청취 및 현지조사(제11조, 제12조)
- 심의결과의 결정 및 보관(제14조)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1-1, 소로3-70호선)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1-1,소로3-70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인가사항을 같은 법 제91조,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04일

김 해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1168-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1-1,소로3-70호선)사업
 - 사업의 명칭 : 명동일반산업단지 가감속차로 설치 및 교차로 개선공사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시설의 종류	도시계획결정		금회 시행규모			비고
	길이(m)	폭원(m)	길이(m)	폭원(m)	당초 면적(m ²)	
대로 1-1-1	22,580	35~49	560	9~35	2,282	최초결정일 1991.12.31
소로 3-70	897	6~12	52	6~12	554	최초결정일 2017.09.22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주)한림테크 대표이사 박상천
 - 주 소 :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 1102-90
5. 사업기간 : 2018. 01. 12. ~ 2020. 02. 1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조서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조서 : 불임
7.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사유
 - 병동 일반산업단지와 명동 일반산업단지 간 약정서에 따른 우수관경 변경
8. 관계도면 : 실음생략 【김해시청 도시계획과(☎330-3595)비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사서

(당초/변경)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대로1-1-1호선]											
1	명동	1168 - 11	전	45	45	국(국토교통부)					
2	명동	1168 - 7	도	17	17	국(국토교통부)					
3	명동	1168 - 9	도	15	15	국(국토교통부)					
4	명동	1168 - 13	도	4	4	국(국토교통부)					
5	명동	1169 - 2	도	5	5	국(국토교통부)					
6	명동	산190 - 3	도	37	37	국(국토교통부)					
7	명동	1356 - 1	도	10	10	국(농림축산식품부)					소유자 변경
		1356 - 1	도	10	10	주식회사 한*데*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 ****-**				
8	명동	1243 - 12	도	121	121	국(국토교통부)					
9	명동	1244 - 8	도	85	85	국(국토교통부)					
10	명동	1359 - 4	구	32	32	국(국토교통부)					
11	명동	1274 - 15	도	43	43	최*익	김해군 장유면 유하리 ***				소유자 변경
		1274 - 15	도	43	43	주식회사 한*데*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 ****-**	한국전력 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빛가람동)	지상권	
12	명동	1274 - 14	도	38	38	강*도	김해군 이북면 퇴래리 ***				소유자 변경
		1274 - 14	도	38	38	주식회사 한*데*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 ****-**				
13	명동	1274 - 16	도	48	48	국(국토교통부)					
14	명동	1274 - 10	도	18	18	국(국토교통부)					
15	명동	1273 - 19	도	11	11	국(국토교통부)					
16	명동	1273 - 20	도	79	79	국(국토교통부)					
17	명동	1273 - 16	답	9	9	김해시					소유자 변경
		1273 - 16	답	9	9	주식회사 한*데*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사

(당초/변경)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18	명동	1273 - 15	도	1	1	케**부*산 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 (역삼동)				소유자 변경
		1273 - 15	도	1	1	주식회사 한*데*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 ****-**				
19	명동	1272 - 14	도	6	6	케**부*산 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 (역삼동)				소유자 변경
		1272 - 14	도	6	6	주식회사 한*데*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 ****-**				
20	명동	1272 - 19	도	182	182	국(국토교통부)					
21	명동	1272 - 7	잡	176	176	최*만	부산 사하구 괴정동 ****-*	우리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가 *** (괴정동지 점)	근저 당권	소유자 변경
		1272 - 7	잡	176	176	주식회사 한*데*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 ****-**	-	-	-	
22	명동	1277 - 14	도	22	22	국(국토교통부)					
23	명동	1277 - 7	답	191	191	송*희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 ****-*				소유자 변경
		1277 - 7	답	191	191	주식회사 한*데*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 ****-**				
24	명동	1278 - 17	도	17	17	국(국토교통부)					
25	명동	1278 - 7	답	87	87	송*희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 ****-*				소유자 변경
		1278 - 7	답	87	87	주식회사 한*데*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 ****-**				
26	명동	1280 - 15	도	68	68	국(국토교통부)					
27	명동	1279	대	93	93	김*택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				소유자 변경
		1279	대	93	93	주식회사 한*데*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 ****-**				
28	명동	1280 - 10	답	63	63	최*진	부산 금정구 부곡동 ****-* 부곡아파트 ***호				소유자 변경
		1280 - 10	답	63	63	주식회사 한*데*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 ****-**				
29	명동	1280 - 14	도	6	6	국(국토교통부)					
30	명동	1281 - 10	도	11	11	국(국토교통부)					
31	명동	1281 - 7	답	17	17	채*호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 *** 온누리아파트 ***호	부원 새마을 금고	경상남도 김해시 부원동 ****-**	근저당권 , 지상권	소유자 변경
		1281 - 7	답	17	17	주식회사 한*데*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 ****-**	부원 새마을 금고	경상남도 김해시 부원동 ****-**	근저당권 , 지상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사

(당초/변경)

일련 번호	소재 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32	명동	1281 - 5	도	85	85	국(국토교통부)					
33	명동	1281 - 4	답	15	15	채*호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 *** 온누리아파트 ***호	부원 새마을 금고	경상남도 김해시 부원동 ***-**	근저당 권, 지상권	소유자 변경
		1281 - 4	답	15	15	주식회사 한*테*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 ****-**	부원 새마을 금고	경상남도 김해시 부원동 ***-**	근저당 권, 지상권	
34	명동	1282 - 21	도	5	5	국(국토교통부)					
35	명동	1282 - 8	답	20	20	허*	김해군 이북면 퇴래리 ****				소유자 변경
		1282 - 8	답	20	20	주식회사 한*테*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 ****-**				
36	명동	1284 - 13	도	14	14	국(국토교통부)					
37	명동	1284 - 14	도	308	308	국(국토교통부)					
38	명동	1284 - 7	답	115	115	김*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	(주)화승상 호 저축은행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	근저당 권, 지상권	소유자 변경
		1284 - 7	답	115	115	주식회사 한*테*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 ****-**	-	-	-	
39	명동	1285 - 7	답	36	36	허*호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				소유자 변경
		1285 - 7	답	36	36	주식회사 한*테*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 ****-**				
40	명동	1285 - 14	도	114	114	국(국토교통부)					
41	명동	1170 - 9	전	13	13	최*희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상동로 ***-*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가 ***	근저당 권, 지상권	소유자 변경
		1170 - 9	전	13	13	주식회사 한*테*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 ****-**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가 ***	근저당 권, 지상권	
합 계		41필지		2,282	2,28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사서

(당초/변경)

일련 번호	소재 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소로3-70호선]											
1	명동	1170 - 7	대	1	1	최*희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상동로 ****~*	주식회 사신한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가 ***	근저당 권, 지상권	소유자 변경
		1170 - 7	대	1	1	주식회사 한*테*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 ****~**	주식회 사신한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가 ***	근저당 권, 지상권	
2	명동	1170 - 8	전	94	94	최*희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상동로 ****~*	주식회 사신한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가 ***	근저당 권, 지상권	소유자 변경
		1170 - 8	전	94	94	주식회사 한*테*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 ****~**	주식회 사신한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가 ***	근저당 권, 지상권	
3	명동	1173 - 1	도	97	97	김해시					
4	명동	1355 - 4	도	43	43	국(농림수산부)					
5	명동	1355 - 6	도	24	24	국(농림수산부)					소유자 변경
		1355 - 6	도	24	24	주식회사 한*테*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 ****~**				
6	명동	1355 - 7	도	7	7	국(농림수산부)					
7	명동	1361 - 8	구	100	100	국(국토교통부)					
8	퇴래	1044 - 3	도	188	188	국(국토교통부)					
합 계		8필지		554	554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 공공공지, 소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 공공공지, 소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인가사항을 같은 법 제91조,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04일

김 해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김해시 삼계동 670-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 공공공지, 소공원)사업
 - 사업의 명칭 : 삼계동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주변도로 개설공사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시설의 종류	도시계획결정			금회 시행규모				비고
	길이(m)	폭원(m)	면적(㎡)	길이(m)	폭원(m)	당초 면적(㎡)	변경 면적(㎡)	
중로 2-20호선	345	21	-	120	15~18	2,451	2,451	
중로 3-50호선	640	16	-	640	13~16	9,076	9,076	
소로 1-229호선	580	10	-	580	10	5,807	5,807	
소로 2-682호선	74	8	-	74	8	599	599	
소로 3-560호선	89	6	-	89	6	545	545	
공공공지	-	-	130.6	-	-	129	130.6	
소공원	-	-	3,407.1	-	-	3,382	3,407.1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김해삼계동지역주택조합 대표자 김영철
 - 주 소 : 김해시 활천로 6번길 24 3층
5. 사업기간 : 2016. 03. 25. ~ 2019. 12. 30.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조서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조서 : 변경없음(생략)
7.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사유
 -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8. 관계도면 : 실음생략 【김해시청 도시계획과(☎330-3595)비치】

김해도시관리계획(시설: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시설: 주차장)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김해시청 도시계획과(☎ 330-3594)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 10. 04.

김 해 시 장

1. 김해도시관리계획(시설: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03	주차장	전하동 17-1번지 일원	323	감) 323	-	'09.11.26	제2종일반 주거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103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지 - 위치 : 전하동 17-1번지 일원 - 면적 : 3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주차장이 교차로 가각부에 위치하고 세장형의 형태로서 차량 시거 확보 불량(이중주차, 불법주차)에 따른 안전 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폐지 후 유희부지를 노인 여가시설을 설치하고자 도시관리계획으로 주차장 폐지

2. 김해도시관리계획(시설: 주차장) 결정(변경) 도면 : 생략

김해시 고시 제2019-252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김해도시관리계획(감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정정고시

- 김해시 고시 제2019-234호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한 김해시 삼계동 1055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주택법」 제15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하며, 김해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합니다.
- 관계도서(관련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는 김해시청 공동주택과(☎055-330-366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 10. 04.
김 해 시 장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변경없음)
 - 사업의 명칭 : 삼계감분지역주택조합
 - 사업주체의 성명·주소
 - 상 호 : 삼계감분지역주택조합 외 1인
 - 대표자성명 : 이영광
 - 주 소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2400번길 48
 - 사업시행자의 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위 치 :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동 1055번지 일원
 - 면 적 : 29,061㎡
 - 건설주택의 규모
 - 건축면적 : 4,325.7869㎡
 - 건축연면적 : 88,746.7817㎡
 - 주택평형별 및 규모

구 분	건물규모	세대수	공급면적(㎡)			
			계	전용	주거공용	세대수
공동주택 (민간분양)	지하2층~지상28층 공동주택(7동) 및 부대복리시설(8동)	629세대	82.6304	60.9686	21.6618	187
			99.4150	73.9081	25.5069	184
			113.6426	84.8729	28.7697	258
			63,064.0516	46,897.4268	16,166.6248	629

○ 부대건물현황

구 분	규 모		비 고
	층 수	연 면 적 (㎡)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지상 1층	132.6931	
주민공동시설(어린이집)	지상 1층	293.7787	
주민공동시설(작은도서관)	지하 2층	76.8600	
주민공동시설(주민편의시설)	지하 2층	310.4439	
주민공동시설(실내운동시설)	지하 2층	314.0839	
주민공동시설(실외운동시설)	지상 1층	318.0955	
주민공동시설(어린이놀이터)	지상 1층	1,184.3900	
관리사무실	지하 2층	92.0000	
방재실	지하 2층	65.1000	
MDF	지하 2층	27.9000	
경비실	지상 1층	58.0350	
펌프실/전기실/발전기실/빗물처리시설	지하 1층~2층	504.3488	
지하주차장	지하 1층~2층	22,843.9284	
근린생활시설	지하 1층~2층	963.5583	

- 사업시행기간 : 2019. 10. ~ 2022. 09.
-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변경)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변경없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불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변경없음)
 -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변경없음)
 -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변경없음)

<붙임1>

김해도시관리계획(감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87	감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김해시 삼계동 1055번지 일원	-	증) 29,061	29,061	-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결정 내용	결정 사유
1-87	감분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김해시 삼계동 1055번지 일원 • 면적 : 29,061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공동주택) 예정 구역에 대하여 도시의 기능 및 미관증진,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고자 하며, 사업 완료 후 대상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계획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2.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변경)

가.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면적(m ²)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9,061	-	29,061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28,923	-	28,923	99.5	
준공업지역	138	-	138	0.5	

나. 토지이용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면적(m ²)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증) 29,061	29,061	100.0	
주거용지	-	증) 26,265	26,265	90.4	
도시기반시설용지	-	증) 2,796	2,796	9.6	
도로	-	증) 2,026	2,026	7.0	
근린공원	-	증) 770	770	2.6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1) 교통시설(변경)

가) 도로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3	63	13~14	국지 도로	135	대3-1-2	삼계동 1058-1	일반 도로	-	-	

○ 도로 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중로 3-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선신설 - 폭원 : 13~14m - 연장 : 135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건설되는 주택단지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노선신설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치	면 적(m ²)	
합 계		29,061	-	-	29,061	
A1	A1	26,265	-	김해시 삼계동 1055번지 일원	26,265	주택용지
도 로		2,026	-	김해시 삼계동 1060-5번지 일원	2,026	
구 거		770	-	김해시 삼계동 1069-1번지 일원	770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1) 주택용지

도 면 표 시 번 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 번호	획지 번호		
A1	A1	-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용도(가) : 주택법 제2조에 의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나)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0%이하 ※ 건축법 제8조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 -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에 따라 100분의 120범위 내에서 완화하여 적용 - 인센티브적용 산식 = 220%(제2종일반주거지역) × 1.2 = 26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 250% 이하 적용
			높 이	· 28층이하
			기 타	·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은 시행지침을 참조하여야 함

3. 감분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없음)

제정 2019.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작성되는 지구단위계획에 적용되며, 이를 시행함에 있어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및 결정도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결정조서 및 결정도에 표시되지 않은 시행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침의 적용범위)

본 지침은 감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지침적용의 기본원칙)

- ① 지침에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나 김해시 관련 조례에 따른다.
- ② 지침의 일부 규제내용이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들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 ③ 지침의 내용은 규제사항과 권장사항으로 구분된다. 규제사항은 반드시 지켜야하는 사항이며, 권장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킬 것을 권장하는 사항이다.
- ④ 본 지침 중 공공시설에 대하여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내용은 추구하는 설계목표나 방향을 가시화 하는 것으로 시행주체에 대해 권장사항적 성격을 지닌다.
- ⑤ 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은 차후 지역여건이나 대지의 환경이 변화되어 적용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⑥ 향후 관련 법령이 개정·제정 또는 변경될 경우에는 개정·제정 또는 변경된 법령을 따른다.
제4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일단의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2. “주택용지”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결정된 주택용지를 말한다.

3.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허용용도”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용도 중 해당지역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말한다.

나. “불허용도”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더라도 사용될 수 없는 용도를 말한다.

② 이 지침에서 정의되지 않는 용어로서 각종 법규에 정의된 용어는 그에 따르며 기타 용어는 관습적인 의미로 해석한다.

제2장 주택용지

제1절 규제사항

<건축물에 관한 사항>

제5조 (건축물의 용도)

주택용지 내 건축물의 용도는 <표1>과 같다.

<표1> 주택용지 내 건축물의 용도

구 분	도면표시	용 도		비 고
		허 용	불 허	
주택용지	A1	주택법 제2조에 의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6조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주택용지내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는 <표2>와 같다.

<표2> 주택용지내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구 분	건폐율	용적률	높 이	비 고
주택용지	60% 이하	250% 이하	28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7조 (건축물의 외관 및 형태)

① 공동주택의 지붕형태는 경사지붕이 되도록 한다.

② 경사지붕의 구배는 10분의 4이상이 되도록 한다.

제8조 (건축물의 담장)

도시계획도로와 접한 도로변에 담장 설치시에는 생울타리 등 자연재료를 사용한다.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

제9조 (차량출입)

① 차량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대지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며, 도로 각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②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에서 언급한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으나, 승인권자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폭 10m 이상 도로의 교차로 모퉁이로부터 10m 이내의 구간

2. 버스정류장, 기타 승하차시설 등

<경관에 관한 사항>

제10조 (경관관리)

경관관리는 「경관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김해시 기본경관계획」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환경에 관한 사항>

제11조 (환경저감대책)

6만㎡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상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기준을 준용하여 환경저감대책을 수립하고 낙동강유역청과 별도 협의 후 시행한다.

제2절 권장사항

<건축물에 관한 사항>

제12조 (건축물의 외관 및 형태 등)

건축물의 외관 및 형태 등은 「김해시 기본경관계획」의 경관공통 설계지침을 반영하여 계획 하되,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반영함을 권장한다.

1. 공동주택의 옥상에는 가급적 물탱크의 설치를 지양한다.
2. 건축물의 색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가. 건축물의 색채는 「김해시 기본경관계획」의 용도별 색채계획을 반영한다.
 - 나. 신축 및 재도색 아파트 외벽은 「김해시 기본경관계획」 주거건축물 색채 범위를 반영하여 도시디자인과의 협의를 받도록 한다.
 - 다. 색채 활용 시 한 블록에는 동일 색상계열 내에서 지붕색, 벽면색, 강조색을 선정하여 적용함을 권장한다.
3. 건축물의 야간조명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가. 보행자 시야에 지장을 주지 않는 조도를 설정하고, 주거지 내부로의 빛의 유입을 차단한다.
 - 나. 환경보전 및 빛 피해를 고려하여 과도한 빛 발생과 원색 색상, 점멸조명 등의 현란한 빛 음직임 조명은 지양한다.
 - 다. 공동주택은 옥탑부 강한 휘도 라인조명 등 자극적 야간 조명과 과도한 크기의 BI·CI 사용을 억제하고, 문자나 도형의 부분 조명 방식을 권장한다.

<경관에 관한 사항>

제13조 (조경 및 식재)

- ① 녹지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식재하도록 권장한다.
 1. 도로변에는 관상효과가 큰 관목류와 교목으로 경관식재 및 유도식재를 한다.
 2. 건축물 주변에는 지면을 피복하는 수목과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수목을 식재한다.
- ② 주택용지 내 바닥포장은 친환경적 투수포장 재료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에너지이용에 관한 사항>

제14조 (에너지이용)

저탄소녹색성장 및 에너지절약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와 각종 에너지이용효율 향상설비(절약설비) 등의 설치를 권장한다.

제3장 공공시설용지

<도로시설에 관한 사항>

제15조 (포장재료 등)

- ① 포장재료는 보행 및 차량의 하중을 감안하여 내구성이 우수하고 미끄럼과 눈부심이 방지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 ② 포장패턴은 가로수 식재 및 시설물 배치 등과 연계하여 일체적 가로분위기를 조성한다.
- ③ 보도부분의 포장패턴은 경관 및 방향성 제공 등의 요소를 감안하여 선정한다.
- ④ 횡단보도 주변에는 유도점자블럭과 보행편의를 위한 단차 없는 경계석을 설치한다.

제16조 (가로수 식재)

동일노선에는 가급적 동일수종을 식재한다.

제17조 (자전거도로)

자전거도로의 평면 교차지점에는 자전거 횡단표기시설을 설치하고, 주요목적지에는 자전거 보관대를 배치한다.

제18조 (보행자도로)

- ① 보행자도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유지하고, 장애인, 노약자 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한다.
- ② 보행자도로의 주출입구 부분에는 차량진입 방지를 위한 볼라드를 배치한다.
- ③ 보행자도로의 포장은 「김해시 가로환경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설치하며, 투수성 포장재등 일체적이고 배수가 원활한 재료를 사용한다.

<구거에 관한 사항>

제19조 (구거)

- ① 구거의 설치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관련부서(기관)의 협의를 통하여 정한다
- ② 구거의 설치 후 기부채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본 시행지침은 고시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진영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승인 고시

김해시 진영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승인사항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농어촌정비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0. 04.

김 해 시 장

1. 사 업 명 : 진영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 사업목적 : 진영읍 중심거점 기능회복을 위한 지역 인프라 구축 및 공동체 활성화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3. 사 업 비 : 8,000백만원
4. 주요사업내용
 - 가. 위 치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여래리, 신용리 일원
 - 나. 주요사업
 - 기초생활기반확충 : 하모니타운 건립, 원도심이음길 조성
 - 지역경관개선 : 하모니 숲 길 조성, 금병가로수길 정비
 - 지역역량강화 : 주민교육, 컨설팅, 지역홍보마케팅 등
5. 사업시행자 : 김해시장(위탁시행 : 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
6. 사업기간 : 2018. 1. ~ 2021. 12.
7. 기타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건설과(☎055-330-3793) 및 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055-320-48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공원,공공공지) 결정(변경) ·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공원,공공공지) 결정(변경) · 공원조성계획 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 계획 결정(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김해시청 도시계획과(☎ 330-3594, 330-6923)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 10. 04.

김 해 시 장

1. 김해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 · 문화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35	칠산서부동 행정복지센터	공공청사	흥동 53-2번지 일원	-	증) 2,293.3	2,293.3	-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 정 (변경) 내 용	결 정 (변 경) 사 유
1-35	칠산서부동 행정복지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 종 류 : 공공청사 - 위 치 : 흥동 53-2번지 일원 - 면 적 : 2,29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칠산동과 서부동이 통합되면서부터 사용하고 있는 現 행정복지센터는 건축된지 34년(1985년 사용승인)이 경과된 노후 건축물이며, 부지 협소 등 대민 행정 서비스가 낙후로 주민 불편이 상당하므로 • 칠산서부동 행정복지 센터 신축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으로 결정

2. 김해도시관리계획(시설: 공간시설) 결정(변경) 조서

○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소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87	서부제1공원	어린이공원	흥동 53-2번지	1,789.1	감) 1,789.1	-	92.4.17	
신설	1-186	흥동 소공원	소공원	흥동 408-3번지	-	증) 979.7	979.7	-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87	서부 제1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지 - 종류 : 어린이공원 - 위치 : 흥동 53-2번지 일원 - 면적 : 1,78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新 칠산서부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라 어린이공원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폐지
1-186	흥동 소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 종류 : 소공원 - 위치 : 흥동 408-3번지 일원 - 면적 : 97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 어린이공원 폐지에 따라 인근 공공공지에 대체 소공원을 조성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3	공공공지	흥동 408-3번지	979.7	감) 979.7	-	94.6.18	제2종일반주거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3	공공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지 - 종류 : 공공공지 - 위치 : 흥동 408-3번지 - 면적 : 97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 공공공지에 新 소공원 조성에 따라 공공공지를 도시관리계획으로 폐지

3. 공원조성계획 결정 조서 및 사유서

가. 공원조성계획 결정 조서

1) 총괄표

구분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공원면적	-	증) 979.7	979.7	※ 공원시설 설치 기준 : 부지면적의 20% 미만 시설률: 19.8%
시설면적계	-	증) 194.2	194.2	

2) 공원조성계획 결정 사유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결정 내용	결정 사유
1-186	흥동 소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 종류 : 소공원 - 위치 : 흥동 408-3번지 - 면적 : 97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내 공공공지를 소공원으로 조성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고, 지역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회 도시관리계획으로 신설토록 함

3) 토지이용계획표

구분	부지면적(㎡)			시설규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바닥면적	연면적	
조성계획 면적	-	증) 979.7	979.7	-	-	
공원시설	-	증) 194.2	194.2	-	-	
휴양시설	-	증) 165.9	165.9	-	-	
운동시설	-	증) 28.3	28.3	-	-	
녹지	-	증) 785.5	785.5	-	-	

나. 세부조성 계획 결정 조서

1) 휴양시설

구분	도면 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부지면적 (㎡)	건축규모(㎡)		규 모	비 고
					바닥면적	연 면 적		
소 계				165.9	-	-	-	
신설	-	쉼터 1	흥동 408-3번지	165.9	-	-	-	파고라1개소 벤치 2개소

2) 운동시설

구분	도면 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부지면적 (㎡)	건축규모(㎡)		규 모	비 고
					바닥면적	연 면 적		
소 계				28.3	-	-	-	
신설	-	체력단련시설	흥동 408-3번지	28.3	-	-	-	운동기구 3개소

3) 녹지

구분	도면 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부지면적 (㎡)	시설규모(㎡)		규 모	비 고
					바닥면적	연 면 적		
소 계				785.5	-	-	-	
신설	-	녹지	흥동 408-3번지	785.5	-	-	-	

4. 김해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결정(변경) 도면 : 생략

5. 김해도시관리계획(시설: 공간시설) 결정(변경) 도면 : 생략

6. 공원조성계획 결정 도면 : 생략

김해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분산성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김해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분산성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하고 동 사항을 같은 법 제91조,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04일

김 해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김해시 동상동 8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김해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분산성공원)사업
 - 사업의 명칭 : 분산 체육시설 조성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시설의 종류	도시계획결정(㎡)	시행규모(㎡)	시행규모	비 고
근린공원	2,185,130	23,207	다목적구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정구장 외 1식	김고 제2014-79호 (2014. 04. 10.)

※ 토지이용계획

구 분	계	용 도 별				
		도로	휴양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	녹지
면적(㎡)	23,207	1,982	612	6,767	741	13,105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김해시장(체육지원과장)
 - 주 소 :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623)
5. 사업기간
 - 당 초 : 2016. 08. 12. ~ 2019. 08. 31.
 - 변 경 : 2016. 08. 12. ~ 2020. 02. 28.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조서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조서 : 붙임
7.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사유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8. 관계도면 : 실음생략 【김해시청 도시계획과(☎330-3595)비치】

순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1	기정	김해시 동상동	147	전	311	1	김해시 동상동 000	노**	
2	기정	김해시 동상동	56-1	구	53	22	김해시 동상동 000	김해시	
	변경				53	44		안**	김해시
3	기정	김해시 동상동	52-2	전	417	35	김해시 동상동 000	김해시	
	변경				417	70		안**	김해시
4	기정	김해시 동상동	56-2	전	16	16	김해시 동상동 000	안**	
	변경				16	16		김해시	
5	기정	김해시 동상동	55	전	53	53	김해시 동상동 000	안**	
	변경				53	53		김해시	
6	기정	김해시 동상동	54	전	106	106	부산 동구 범일동 0000	차**	
	변경				106	106		김해시	
7	기정	김해시 동상동	53	전	1,110	501	김해시 동상동 000-0	박**	
	변경				1,110	50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로 00, 000동 0000호	전** 외2인
8	기정	김해시 동상동	53-2	전	55	55		김해시	
9	기정	김해시 동상동	60-7	전	123	123	김해시 내동 0000-0 0000아파트 000-0000	김**	
	변경				123	123		김해시	
10	기정	김해시 동상동	60-1	묘	95	95		김해시	
11	기정	김해시 동상동	48-5	도	791	177		김해시	
12	기정	김해시 동상동	1072	구	145	145		국토교통부	
13	기정	김해시 동상동	48-2	전	552	552		김해시	
14	기정	김해시 동상동	48-3	묘	512	512		김해시	
15	기정	김해시 동상동	48-4	전	278	278		김해시	
16	기정	김해시 동상동	42-6	전	183	183		김해시	
17	기정	김해시 동상동	42-4	묘	212	212		김해시	
18	기정	김해시 동상동	42-5	전	119	119		김해시	
19	기정	김해시 동상동	41	전	936	936		김해시	
20	기정	김해시 동상동	40-3	전	350	350		김해시	
21	기정	김해시 동상동	40-2	전	1,584	1,584	김해시 동상동 00-0	박**	
	변경				1,584	1,584		김해시	
22	기정	김해시 동상동	68	전	215	215		김해시	
23	기정	김해시 동상동	66	전	83	83		김해시	

순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24	기정	김해시 동상동	88-1	전	443	443		김해시	
25	기정	김해시 동상동	67	전	2,744	2,744		김해시	
26	기정	김해시 동상동	88-2	대	106	106		김해시	
27	기정	김해시 동상동	88-3	임	218	218		김해시	
28	기정	김해시 동상동	82-1	전	767	767		김해시	
29	기정	김해시 동상동	82-2	대	119	119		김해시	
30	기정	김해시 동상동	82-3	묘	89	89		김해시	
31	기정	김해시 동상동	416-2	묘	106	106		김해시	
32	기정	김해시 동상동	416-1	전	1,339	1,339		김해시	
33	기정	김해시 동상동	415-2	전	1,174	1,174		김해시	
34	기정	김해시 동상동	415-1	묘	60	60	김해시 동상동 000	전**	
35	기정	김해시 동상동	414-3	묘	1,407	1,407		김해시	
36	기정	김해시 동상동	413	전	962	962		김해시	
37	기정	김해시 동상동	414-2	전	350	350		김해시	
38	기정	김해시 동상동	1069	도	504	101		국토교통부	
39	기정	김해시 동상동	56-5	구	45	45		김해시	
40	기정	김해시 동상동	56-6	전	47	47		김해시	
41	기정	김해시 동상동	55-2	전	85	85		김해시	
42	기정	김해시 동상동	55-3	전	14	14		김해시	
	변경				-	-		-	
43	기정	김해시 동상동	54-4	전	6	6		김해시	
	변경				-	-		-	
44	기정	김해시 동상동	54-2	전	323	323		김해시	
45	기정	김해시 동상동	54-5	전	35	35	부산 동구 범일동 0000	차**	
	변경				-	-		-	
46	기정	김해시 동상동	54-3	전	81	81	부산 동구 범일동 0000	차**	
	변경				81	81		김해시	

순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47	기정	김해시 동상동	60-8	전	32	32	김해시 내동 0000-0 임호마을 0차아파트 000-0000	김**	
	변경				-	-		-	
48	기정	김해시 동상동	60-2	전	154	154	김해시 내동 0000-0 임호마을 0차아파트 000-0000	김**	
	변경				154	154		김해시	
49	기정	김해시 동상동	1072-3	구	11	11		국토교통부	
	변경				11	11	김해시		
50	기정	김해시 동상동	1072-4	구	2	2		국토교통부	
	변경				-	-	-		
51	기정	김해시 동상동	61-1	전	8	8		김해시	
	변경			도	2,007	8	김해시		
52	기정	김해시 동상동	1072-2	구	28	28		국토교통부	
	변경				28	28	김해시		
53	기정	김해시 동상동	62-1	전	1,153	1,153		김해시	
54	기정	김해시 동상동	64	전	549	549		김해시	
55	기정	김해시 동상동	64-3	전	549	549		김해시	
56	기정	김해시 동상동	65	전	491	491		김해시	
57	기정	김해시 동상동	89	전	559	559		김해시	
58	기정	김해시 동상동	87	답	563	286		김해시	
59	기정	김해시 동상동	86-1	전	656	656		김해시	
60	기정	김해시 동상동	83-3	묘	337	337	강동	남**	
61	기정	김해시 동상동	1073-2	도	129	129		국토교통부	
62	기정	김해시 동상동	397-2	전	510	510		김해시	
63	기정	김해시 동상동	400-2	전	301	301		김해시	
64	기정	김해시 동상동	402-8	전	421	421		김해시	
65	신설	김해시 동상동	1138	도	3,899	89		김해시	
	기정	합 계			25,776	23,207			
	변경	합 계			31,585	23,207			